



Cosmetic Industry Special Report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PPWR)
심층 분석 보고서

목차

Part I . KEY TAKEAWAYS

Part II .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PPWR) 주요 조항 분석

Part III . 화장품 산업 대응을 위한 Case Study

Part IV . EU 회원국별 패키징 관련 규제 비교 분석

Part V . 국내 법률과의 비교 분석을 통한
실무진들의 Check Point!

Part VI . 패키징 기술 센터와의 인터뷰

Part VII . Q&A



KEY TAKEAWAYS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PPWR)은 포장 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강도 높은 환경 규제다. 이 규제의 도입은 국내 패키징 제도 관련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화장품 산업에게는 EU로 수출하는 플라스틱 패키징에 대한 재활용 원료 사용 비율 의무 준수 및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한 디자인 전면 개편을 요구한다. 이에 따라 화장품 기업들은 지속 가능한 소재 개발, 포장 설계 혁신은 물론 디지털 라벨링 도입과 재활용 인프라 투자까지 필수적으로 단행해야 EU 시장 경쟁력을 유지·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1. 입법 배경 및 정책적 의의

EU의 모든 환경 및 기후 관련 정책의 최상위 전략이자 비전인 EU 그린딜(Green Deal)을 기반으로,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실행 전략 중 하나로, 순환경제 모델로의 전환이라는 제품의 전 생애 주기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EU 순환경제 행동 계획(CEAP, Circular Economy Action Plan)이 제시되었다. 이후 EU는 이 순환경제 실행 계획에서 **패키징**을 핵심 분야로 지정하여 가장 구체적이고 강력한 법적 이행 수단인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¹⁾을 정책적 합의를 통해 마련하였다. PPWR은 2025년 2월 12일에 발효되었으며, 패키징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적용되는 통합적인 규제로, EU 시장뿐 아니라 EU 시장과 연계된 모든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PPWR 정의와 명칭

명칭	PPWR (Europea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Regulation (EU) 2025/40):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
정의	EU 단일 시장의 순환경제 산업 생태계 조성 및 글로벌 표준 선도 달성을 위해 설계된 패키징 법안

입법 배경



국제사회 원칙 및 EU 상위 정책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단계적·구체적으로 발전

1) 기존의 '포장 및 포장 폐기물 지침(PPWD)'은 EU 국가 간의 일관성 및 강제성에서 한계를 가져서 보다 강력하고 통일된 규제 필요성을 인식하여, 지침(Directive)이 아닌 모든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Regulation)을 도입하였다.

PPWR은 패키징 밸류체인 전 과정을 포괄하는 EU의 핵심 규정이다. 패키징의 설계 및 생산-소비-사용-폐기물 처리에 대한 사후 검증까지 모든 단계에 구체적 조항을 두고 있으며, 타 EU 순환경제 관련 정책/법안, 지침 및 프레임워크와도 긴밀히 연계하여 EU의 그린딜 목표를 이루고자 한다. 이런 보완적인 연결성을 통해 규제의 단절성을 보완하고, 산업계의 이행 가능성과 정책의 실효성을 함께 높이는 기반이 된다. 더 나아가, PPWR의 세부 규제 제정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PPWR의 정책적 의의

설계&생산 (Design & Production)

(PPWR) 재활용성 등 패키징 설계 기준, 조화된 라벨 부착 또는 QR 코드 등록, EPR 생산자 등록

(ESPR¹⁾) DPP 시스템: 패키징 재질, 지속가능성 설계 정보 입력

(WFD²⁾) ECHA SCIP Database: 유해물질 정보, (REACH Regulation) 화학물질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

(GCD³⁾) 환경성 주장(Green Claims)에 대한 사전 검증

소비·사용 (Consumption & Use)

(PPWR) 재사용 목표 추적 및 폐기물 회수율 보고, EPR 비용 산정 및 납부

(WFD) 국가 단위 폐기물 통계/위계와 연동

(GCD) 패키징의 라벨링 및 마케팅이 허위, 과장, 모호하지 않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도록 규제

폐기물 처리 (Waste & Recycling)

(PPWR) 재활용 실적 보고

(Waste Statistics Regulation⁴⁾) Eurostat 시스템 기반 순환경제 데이터 수집

(SUPD⁵⁾) 일회용 플라스틱 등 회수 목표 연계 실적 수집

(WFD) 전체 폐기물 발생 감축, 관리 시스템 구축

사후 검증

(PPWR / GCD / ESPR) 사후 검증 → 문제 발생 시 증빙서류 제출 요구

(CE Monitoring Framework⁶⁾) Eurostat 시스템 기반 EU 순환경제 성과 모니터링

PPWR: EU 법안 중 패키징 전 주기에 대한 가장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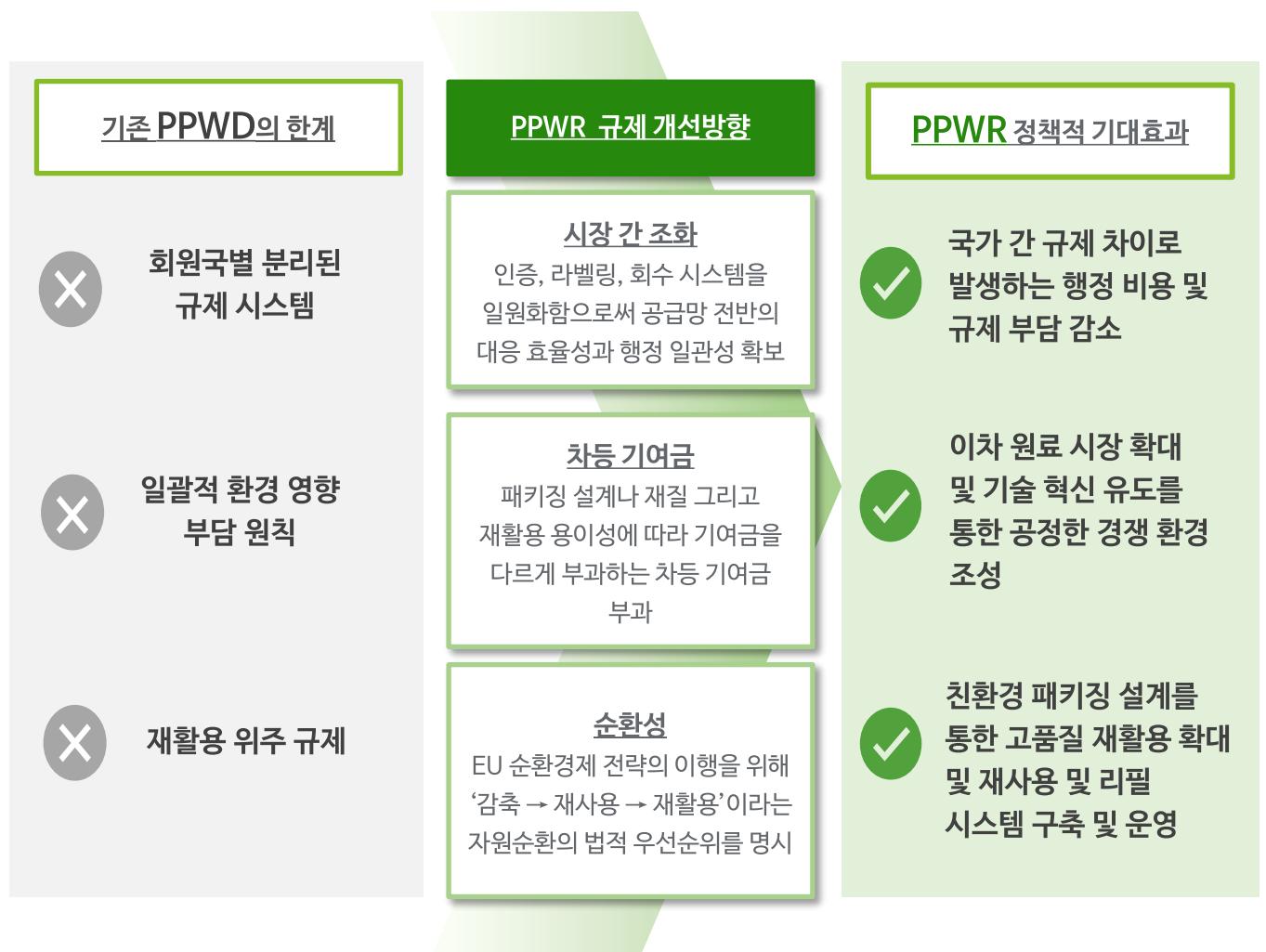
- 1) ESPR: 지속가능제품 에코디자인 규정, (Regulation (EU) 2024/1781)
- 2) WFD: EU 폐기물 기본 지침, Waste Framework Directive (Directive 2008/98/EC)
- 3) GCD: 그린 클레임 지침, Green Claims Directive (Proposal for a Directive on substantiation and communication of explicit environmental claims, COM/2023/166 final)
- 4) Waste Statistics Regulation: 폐기물 통계 규정, Regulation (EC) No 2150/2002 on waste statistics
- 5) SUPD: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 Single-Use Plastics Directive (Directive (EU) 2019/904)
- 6) CE Monitoring Framework: 순환경제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EU Monitoring Framework for the Circular Economy (COM/2018/29 final)

2. 정책 방향

PPWR은 기존 포장 지침(PPWD, 2018/852)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강제성이 있는 규정이다. PPWD는 회원국들이 달성해야 할 목표를 제시할 뿐 회원국마다 법안 적용을 시키는 것에 대한 재량권이 주어졌다. 이에, 회원국마다 다르게 적용되던 규제를 통합해, EU 전체에 하나의 공통 기준을 강제적으로 일괄 적용하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PPWR은 EPR에서 패키징의 재질이나 재활용 용이성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기여금을 부과하는 것을 한층 더 고도화하여, 생산자가 폐기물의 재활용 용이성(Recyclability)에 따라 기여금(수수료)을 부여하는 차등화된 기여금(Modulated Fees)을 방식을 도입했다.

더 나아가, 재활용에만 초점을 맞추던 기존 체계를 ‘감축 - 재사용 - 재활용’이라는 단계적 자원 관리 방식으로 전환했다. PPWR은 이러한 정책 방향을 통해 포장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 품질을 높이며, 자원과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회원국 간 강제성의 부재로 규제 체계 차이에 따른 행정 비용 및 규제 부담을 감소시키고, 패키징 기업 책임을 부여하고, 감축·순환 전략을 폐기물 관리 계층구조로 제시함으로써, 재활용 뿐 아니라, ‘감축 → 재사용 → 재활용’의 3단계인 폐기물 위계(Waste Hierarchy)로 순환경제 실현 방안을 제시한다.

PPWD에서 PPWR로 보완된 사항



PPWR의 핵심 실행 원칙 중 하나는 ‘감축-재사용-재활용’이라는 법적 우선순위(Waste Hierarchy)이다. 감축(Reduce)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감축이 어려울 경우 재사용(Reuse) 그리고 재사용이 안될 경우 재활용(Recycle)을 최대한 활용하는 우선순위를 3R 원칙이라 한다. EU 회원국의 폐기물 발생량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기에, 감축 또는 폐기물 발생 예방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며 포장 최소화를 의미한다. 두번째 우선순위인 재사용은 폐기하지 않고, 재사용 또는 리필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며 재사용에 대한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 세번째 우선순위인 재활용은 폐기물을 수거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사용 및 오염물질 발생이 감축 또는 재사용에 비해 발생하기 때문에 후순위로 요구된다. 이에, 재활용이 될 때에는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품질 재활용(High Quality Recycle)을 통해 자원 순환을 요구한다.

이 3R 원칙에 따라 각각 금지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미준수 시, EU 내 업체 또는 거래되는 제품에 대해서 벌금 및 시장 출시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벌금 및 시장 출시 제한 등의 페널티는 2027년 초 제정되는 처벌규정을 통해 더욱 구체화될 예정이다.

PPWR의 법적 우선순위(Waste Hierarchy)

PPWR Recital 15 : Reduce → Reuse → Recycle 의무인 3R 폐기물 감축이 최우선, 그 다음이 재사용, 마지막이 재활용임을 강조

적용 원칙	1. 감축(Reduce)	2. 재사용(Reuse)	3. 재활용(Recycle)
금지 항목	- 과잉 포장 또는 특정 포장 형식 제한 미준수 ✓ 패키징의 무게 및 부피 기준 ✓ 빈 공간 비율 제한 ✓ 두 겹 구조(double walls) ✓ 불필요한 바닥 구조(false bottoms) 등	- 재사용 인프라 및 패키징 요건 미충족 ✓ 재사용 시스템 요건 불이행 ✓ 리필 스테이션 요건 미준수 ✓ 리필 정보 요건 불이행 ✓ 리필·재사용 제공 의무 불이행	- 재활용 등급 및 회수 가능성 ✓ 재활용 가능성 요건 미준수 ✓ 재활용 함량 요건 미준수
근거 조항	제10조, 제24조, 부속서 IV	제11조, 제26조-제29조, 제32조-제33조, 부속서 VI	제6조, 제7조 및 부속서 II

 각 단계별 ‘금지 항목’ 미준수 시 벌금 및 시장 출시 제한 등 조치 (제62조, 제68조)

3. 화장품 패키징에 미치는 영향

PPWR은 패키징에 대한 전 산업을 포함하고 있으나, 특정 조항과 관련해서는 HORECA 산업¹⁾에만 적용이 된다. 이 조항 외, 기본적으로는 PPWR의 모든 조항에 대해 화장품 패키징은 모두 적용이 되나, 예외적으로, 화장품 패키징은 ‘접촉 민감 패키징(Contact-sensitive packaging)²⁾’으로 분류되어, 특정 항목과 관련한 목표 설정 및 규제 정도가 상이하게 적용이 된다. 즉, 접촉 민감 패키징에 대해서는 일반 패키징보다 비교적 완화된 조건이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으며, 더 까다로운 규제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PCR(플라스틱 패키징의 재활용 최소 함량)은 비교적 완화되어 적용되었으나, 유해화학물질 사용 및 데이터 투명성 및 보고와 관련된 부분은 더 엄격하게 적용된다. 또한, 화장품 산업에서는 안전성과 위생 저해 우려로 인해 플라스틱 패키징의 재활용 최소 함량 등 소재 기준은 다소 완화되었으나,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품 특성상 패키징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접촉 민감 패키징	
접촉 민감 패키징	PPWR은 모든 유형의 패키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나, 화장품 패키징과 같이 인체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유형은 ‘접촉 민감 패키징(Contact-sensitive packaging)²⁾’으로 분류되어 별도 규정 제시 → 화장품의 경우 내용물이 변질되었을 때, 인체 건강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위험이 포장재를 통해 제품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법률(예외 조항 등) 적용
일반 패키징과 차이점 (별도 규제 적용)	- 일반 패키징 대비 완화된 PCR 함량 기준, 사용 제한 및 금지 규정 제공 *내용물 특성상 재활용이 어려운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 산업적 현실을 고려해 일정 수준의 예외 허용 - 일반 패키징 대비 엄격한 공급사 정보 제공, 인체 영향 평가 및 모니터링 필요 *인체와 직접 접촉하는 제품 특성상 안전성과 위생에 대해 보다 높은 규제 수준을 유지하려는 정책 기조 반영 - 예외 및 면제 규정 2032년 마련 예정

일반 패키징 대비 완화된 규제

- 위생·안전·품질 유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
- 플라스틱 패키징의 재활용 최소 함량은 비교적 완화된 규제 적용

Point

일반 패키징 대비 강화된 규제

- 인체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유해물질 제한, 정보 제공, 안전성 테스트, 라벨링 등에서 일반 패키징보다 훨씬 더 강화된 규제가 적용

Point

- HORECA 산업: 유럽 산업 분류 NACE Rev. 2에 해당하는 산업으로 경제 활동의 통계적 분류에 따른 호텔, 레스토랑, 카페 등 숙박 및 식품 서비스 활동을 의미
- 접촉 민감 패키징: 동물 영양 첨가제, 식품과 접촉하도록 의도된 재료 및 제품, 사료, 화장품, 의료기기, 약물사료, 의약품, 위험물질 등의 범위에 속하는 제품에 사용하도록 의도된 포장재를 의미

일반 패키징 대비 **완화된** 규제

- 위생·안전·품질 유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
- 플라스틱 패키징의 재활용 최소 함량, 특정 포장 형식 사용에 대한 제한에 대한 규정에서 비교적 완화된 규제 적용

Point

제7조

플라스틱 패키징의 재활용 최소 함량

Minimum recycled content in plastic packaging

인체에 직접 접촉하는 제품의 특성상, 안전성과 위생에 대한 높은 품질 기준이 요구된다. 이러한 이유로, 안전성과 위생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PCR 사용에 관한 규제는 **일반 포장재에 비해 다소 완화되어 적용**되고 있다.

주요 내용

- 2026년 PCR 함량 산정 방법론 도입, 2030년부터 PCR 사용 의무 본격 시행
- 2027년 이후부터 PCR 원료의 출처 및 EU 기준에 상응하는 지속가능성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인·검증 필수
- 플라스틱 패키징 대비 접촉 민감 패키징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PCR 함량 의무 부과

구분	~2030년	~2040년
PET 기반 접촉 민감 패키징	30%	50%
PET 외 접촉 민감 패키징	10%	25%
일회용 플라스틱 병	30%	65%
기타 플라스틱 패키징	35%	65%

제25조

특정 패키징 형식 사용에 대한 제한

Restrictions on use of certain packaging formats

인체 접촉 제품의 경우, 특정 포장 유형(Annex V)에 대해 제한 요건을 정하고 있다. 화장품 등의 접촉 민감 패키징이 위생·안전 확보나 물류상 불가피함 등의 이유로 예외·면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관련 가이드라인의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주요 내용

- 2030년 1월 1일부터, 부속서 V에 해당하는 패키징 유형은 시장에 출시 불가
- 화장품 산업의 경우, **일회용 플라스틱 그룹 포장과 숙박업**(NACE Rev. 2 코드) **용 일회용 패키징**은 규제 대상
- 2027년 2월 12일까지 부속서 V의 예외·면제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 예정

부속서 V

- | | |
|--|---|
| <p>❌ 일회용 플라스틱 그룹 포장(결속필름, 슈링크 랩)
단, 물류적으로 필수인 그룹 포장은 가능</p> <p>❌ 가공되지 않은 신선 과일·채소용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그물망, 봉지 등)
단, 1.5kg 미만의 신선 과일 및 채소 소포장 시,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 가능</p> <p>❌ 호텔, 레스토랑, 카페 내 현장 소비용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일회용 컵 등)
단, 식수 공급이 불가능한 업장은 가능</p> | <p>❌ 숙박업(개별 예약)용 일회용 포장(샴푸, 바디로션 등)
NACE Rev. 2로 분류되는 숙박업 코드에 공급되는 일회용 위생용품에만 적용</p> <p>❌ 호텔, 레스토랑, 카페 내 조미료/소스 등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
단, 즉석섭취용 테이크아웃 음식과 함께 제공되는 경우, 병원·클리닉·요양원 등 개인별 위생이 필수인 의료기관에서 안전·위생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능</p> <p>❌ 초경량 플라스틱 쇼핑백(식품용 얇은 비닐 봉지 등)
단, 위생상 필요하거나 식품 낭비 방지를 위해 식품 판매 시 제공되는 경우 가능</p> |
|--|---|

일반 패키징 대비 강화된 규제

- 접촉 민감 패키징은 인체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유해물질 제한, 정보 제공, 안전성 테스트, 라벨링 등에서 일반 패키징보다 훨씬 더 강화된 규제가 적용

Point

제5조

패키징에 대한 물질 요구 사항(유해물질)

Requirements for substances in packaging

인체와 직접 접촉하는 접촉 민감 패키징의 경우, 유해물질이 인체에 노출되는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일반 패키징보다 훨씬 엄격한 물질 제한 기준이 적용된다.

주요 내용

- 우려물질의 존재 및 농도 및 폐기물 관리의 결과와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도 최소화되도록 제조
- (EC) 규정 1935/2004의 식품 접촉 물질 및 품목에 대한 제한 및 특별 조치에 대한 적용을 침해하지 않도록 적용

제16조

공급사의 의무

Information obligations of suppliers of packaging or packaging materials

공급업체는 모든 패키징 관련 정보(특히 인체 건강과 직결된 유해물질 검출 결과, 사용 원료의 출처, 관리 기준 등)를 체계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기업과 소비자 모두가 안전한 제품 사용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요구되고 있다.

주요 내용

- PPWR를 포함하여 EU의 모든 규정에서 접촉 민감 패키징에게 요구하는 테스트, 안전성 인증, 적합성 선언서 등 제공 필요

정부의 의무 관련 조항

제58조

국가 차원의 리스크 대응 절차

Procedure for dealing with packaging presenting a risk at national level

접촉 민감 패키징에서 잠재적으로 인체 건강에 유해 가능성이 판단되는 패키징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신속한 대응과 회수 조치가 요구된다. 위험 평가와 관리 절차를 거치며, 필요 시 적극적인 시장 퇴출 및 경고 조치가 이루어진다.

주요 내용

- 환경 또는 인체 건강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패키징에 대한 평가 실시
- 시장 감시 기관이 정한 합리적이고 위반 사항의 성격과 해당하는 경우,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기간 내에 적절하고 비례적인 시정 조치를 취하여 포장을 해당 요건에 적합하게 만들 것을 요구

제60조

위험을 초래하는 적법한 패키징

Compliant packaging which presents a risk

법적 기준을 준수하는 포장재라 하더라도, 실제로 인체 건강에 위험을 미칠 가능성이 발견된다면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보다 철저하게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주요 내용

- 환경이나 인간 건강에 위험을 초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더 이상 해당 위험을 나타내지 않도록 해당 위험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모든 적절한 조치 이행
 - 포장을 적합하게 조정(Bring the packaging into conformity)
 - 시장에서 포장을 철수(Withdraw the packaging from the market)
 - 포장 리콜(Recall the packaging)

4. 화장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

PPWR이 제시하는 ‘감축 - 재사용 - 재활용’의 법적 우선순위는 화장품 산업의 패키징 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감축 측면에서는 제품 포장의 부피와 여백을 최소화하고, 리필 구조의 확대 도입이 주요 대응 전략으로 자리잡게 된다. 재사용 단계에서는 재사용을 위한 안전 및 위생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세척 가능성과 내구성을 갖춘 리필 용기의 생산을 증가시키고 재사용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증빙 문서 확보가 의무화된다. 재활용 측면에서는 재질과 구조가 재활용이 용이한 방식으로 설계되고, 중금속 등 유해물질 사용에 대한 환경 적합성 기준이 강화되며, 공급망 전반에 걸쳐 재활용성에 대한 목표 설정과 고품질 재활용성 및 추적성과 관리 연속성을 강화할 수 있는 데이터 연계 체계가 요구된다. 이와 함께 EPR 하에서 분담금 산정 및 정산을 위한 정보 수집 구조가 정비되면서, 전반적인 폐기물 재활용률 향상과 자원 순환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 규정들은 2030년 이전에 수립이 될 예정이며, 2030년 이후 화장품 패키징 산업에는 감축, 재사용, 재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구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PPWR 조항

화장품 패키징 산업에 미치는 영향

감축

- 제10조(포장 최소화)
- 제24조(과대포장 관련 의무)
- 제25조(특정 패키징 형식 사용에 대한 제한)

- ① 패키징 최소화
- ② 패키징 공간비율 합리화
- ③ 리필 용기로 전환

재사용

- 제11조(재사용 가능 패키징)
- 제26조(재사용 가능 패키징에 관한 의무)
- 제27조(재사용 시스템에 관한 의무)

- ① 재사용 가능한 안전 및 위생 요건 충족
- ② 재사용 시스템 증빙 문서 확보
- ③ 세척·회수·재충전 가능한 시스템 구축

재활용

- 제5조(패키징에 대한 물질 요구 사항(유해물질))
- 제6조(재활용 가능한 패키징(재활용성))
- 제7조(플라스틱 패키징의 재활용 최소 함량)
- 제52조(재활용 목표)
- 제45조(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PR)

- ① 환경 적합성을 고려한 패키징 전환
- ② 재활용성 성능 평가 도입을 목표 설정
- ③ 재활용 재료 사용 의무화
- ④ 재활용률 목표 설정 및 이행
- ⑤ EPR 차등 기여금 적용

PPWR 정책 목표는 화장품 패키징 산업의 선순환 구조로 전환을 촉진

5. 주요 타임라인

PPWR은 발효 이후 2026년부터 주요 의무사항의 적용을 시작하며, 세부 기준 마련이 필요한 항목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법 절차와 일정을 예고하고 있다. 모든 세부 요건이 마련되어 규정 이행이 본격화되는 시점은 2030년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전체 입법 타임라인을 고려한 선제적 대응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사항들은 제5조부터 11조 그리고 제 12조의 라벨링 의무사항으로 이에 대한 준비가 중요하다.

PPWR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패키징에 대한 물질 요구 사항 (유해물질) (제5조)	발효	시행	우려 물질 제한 규정 채택 (TBD)						DfR ¹⁾ 우려 물질 기준 적절성 평가 시행							
재활용 가능한 패키징 (재활용성) (제6조)	발효			DfR ¹⁾ 기준 수립			DfR ¹⁾ 및 재활용 실적 추적 체계 시행 대규모 재활용 평가 방법론 설정				대규모 재활용 평가 시행			DfR ¹⁾ 등급 기준 상향 (≥B 등급)		
플라스틱 패키징의 재활용 최소 함량 (제7조)	발효	시행 PCR ²⁾ 함량 산정 방법론 수립		면제 적합성 평가 수립	PCR ²⁾ 함량 산정 방법론 시행	PCR ²⁾ 사용 의무화 시행			타 재질 PCR ²⁾ 사용 의무화 필요성 검토							PCR ²⁾ 의무 기준 상향 적용
바이오 기반/ 생분해성 패키징 (제8-9조)	발효	세부 기술 표준 수립		환경성 과 검토												
포장 최소화 (제10조)	발효		측정 방법론 수립					규정 시행								
재사용 가능 패키징 (제11조)	발효	시행	재사용 목표 계산 방법론 및 관련 세부 요구 사항 수립			재사용 시스템 운영 요건 수립										
패키징 라벨링 (제12조)	발효	라벨링 기준 수립	EPR 정보 디지털 표시	조화된 라벨, PCR ²⁾ 함량, DRS ³⁾ 정보 표시 시행 우려물 질 표시	재사용 라벨 표시 시행	우려물 질의 디지털 표시 방법론 수립										

기준 수립

시행

단기간 내 시행

■ 기준 수립 ■ 시행 ■ 단기간 내 시행

- 1) DfR: Design for Recycling (재활용성 성능 평가 기준)
- 2) PCR: Post-Consumer Recycled (소비자 사용 후 버려진 플라스틱 제품을 선별하여 재활용한 원료)
- 3) DRS: Deposit and return systems (보증금 반환 제도)

시장 참여자들에게 요구되는 주요 의무사항인 제5~12조 외에, EPR과 데이터 보고 체계의 구축 관련한 일정들도 시장 참여자들의 의무사항이므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EPR의 경우, 2028년 재활용성 성능 평가 등급 및 PCR 세부 기준을 반영하여 차등화 된 기여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수립될 예정이나 시행 시기는 알 수 없어 지속적인 입법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PPWR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시장 참여자의 의무 (제10~24조)	시행															
특정 패키징 형식 사용에 대한 제한 (제25조)	발효		부속서V 상세 기준 수립			특정 패키징 형식 출시 금지 시행		환경 영향 평가 및 면제 조항 타당성 검토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EPR) (제44~47조)	발효	시행 생산자 등록부 및 데이터 포맷 설정		EPR 기여금 차등화 프레임 워크 수립												
데이터 보고 (제56조)	발효		데이터 형식 및 산정 방법론	패키징 데이터 베이스 구축 방법론 데이터 보고 시행												
감축 목표 (제43조)	발효					감축 목표 이행		감축 목표 추가 설정			감축 목표 이행					감축 목표 이행
재사용 목표 및 달성도 계산 (제29조)	발효					재사용 목표 이행		재사용 목표 조정								재사용 목표 이행
재활용 목표 (제52조)	발효					재활용 목표 이행		재활용 목표 추가 설정								

기준 수립 시행 단기간 내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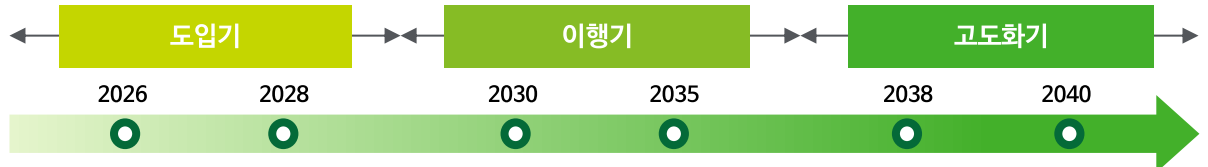
2026년 PPWR이 법적으로 시행되면, 모든 시장 참여자에게 즉시 적용되는 의무사항은 대부분 증빙 문서의 작성·보관, 정보 제공 및 검토 등 형식적 요건 준수이다. 2028년 라벨링과 관련 문서 준비 및 패키징 사용량, 생산량 및 재활용률 등에 대한 데이터를 추적 가능해야 한다. 2030년 이후부터는 PPWR의 모든 규정이 시행되므로 법적 의무를 가지게 된다. 국내 기업들은 2026년, 2028년, 그리고 2030년 기간별로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다.

2026년·2028년 주요 시행 조항 목록

조항	2026년	2028년
패키징에 대한 물질 요구 사항 (유해물질) (제5조)	- REACH 규정의 부록 XVII에 명시된 화학물질 제한 - 중금속 4종(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롬)의 총 함유량을 100 mg/kg 이내로 제한	-
플라스틱 패키징의 재활용 최소 함량 (제7조)	재활용 원료의 출처 요건: EU 내 또는 동등한 환경 기준을 갖춘 제3국에서 수집·재활용된 폐기물	-
재사용 가능 패키징 (제11조)	25년 2월 11일 이후 시장에 출시된 모든 제품에 한해서, 재사용 패키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술문서를 통해 제1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9가지 요건 입증 필요	-
패키징 라벨링 (제12조)	-	조화된 라벨 표시 및 관련 근거 문서 준비
제조사의 의무 (제15조)	- 기술문서 및 적합성 선언서 작성 및 보관 의무 - 설계 변경, 기술표준 변경 시 재평가 의무 - 포장에 유형, 배치번호 등 식별자 부착 의무 - 제조자의 명칭·주소·연락수단을 패키징 또는 데이터 캐리어(QR 등)에 표시 - 소규모 기업이 EU 역내에 위치한 공급사에게 아웃소싱 할 경우 공급사에게 법적 의무 발생	-
공급사의 의무 (제16조)	- 문서 제공 및 언어 요건 충족 의무 - 기존 법률에서 요구하는 접촉 민감 패키징에 대한 시험결과·적합성 선언·문서 제공 의무	-
공인 대리인의 의무 (제17조)	- 적합성 선언서, 기술 문서 보관 (5년 또는 10년) - 시장감시당국 요청에 따라 문서 제공 (10일 이내)	-
수입사의 의무 (제18조)	- 적합성 평가 및 기술문서 작성, 기술문서 보관 의무 - 라벨링 요건 확인 및 유관 문서 보유 여부 점검 - 수입자 정보(상호, 주소 등) 포장에 기재 또는 QR코드 등으로 제공 여부 확인	-
유통업자의 의무 (제19조)	포장 생산자의 생산자등록부 등록 여부 및 라벨링, 제조자·수입자 의무 이행 여부 확인	-
풀필먼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제20조)	포장 취급 시 보관, 포장, 발송 등의 과정에서 규정 위반이나 손상 방지 책임	-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 (제44-47조)	- 기존 EU지침(2008/98/EC)에 따른 EPR 의무 적용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책임: 판매자(생산자)의 등록번호 및 EPR 이행 여부 확인 의무 - 풀필먼트 서비스 제공자의 생산자의 등록·책임 이행 정보 검증 의무 - EU 역외 생산자 또는 타국에 등록된 생산자에 대한 판매국가별로 대리인 지정 의무	-
데이터 보고 (제56조)	-	- 재사용 가능한 패키징 수량 데이터 - 연간 1인당 플라스틱 쇼핑백 사용량 - 패키징 생산량, 수거량, 재활용률 데이터

6. 타임라인별 기업의 대응 과제 및 세부 전략

PPWR의 핵심 시행 일정에 따라 국내 화장품 기업들은 단계별로 체계적인 대응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특히 시행이 임박한 항목부터 2030년까지 점차 강화되는 규제 흐름을 고려하여, 의무사항의 증가 추세를 반영한 타임라인 중심의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이행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



PPWR 시행 일정

2026	2030	2038
PPWR 일반 조항 본격 적용	- PCR, DfR, 포장 최소화 의무 적용 - 감축/재사용/재활용 목표 이행	DfR 등급 상향
2028	2035	2040
- 라벨링 의무화 - 우려물질, EPR 정보 디지털 표시	- 감축 목표 상향 - 대규모 재활용 평가 도입	- PCR 의무기준 상향 적용 - 감축/재사용 목표 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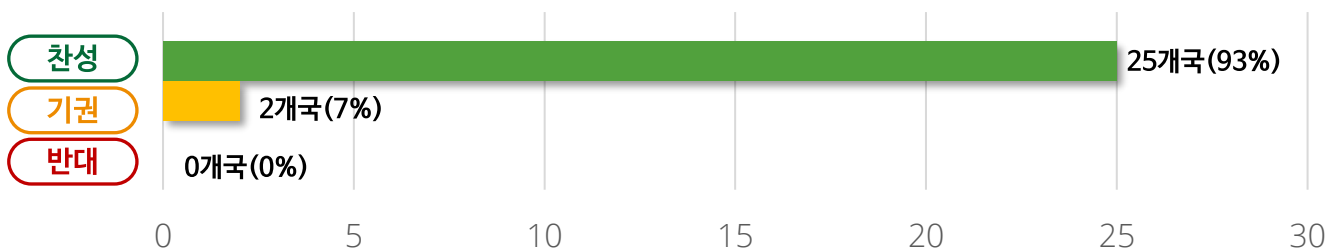
국내기업 To-do list

연도	대응 과제	세부 전략
~2026	정보 제공 및 보고 기반 마련	- 패키징의 금지된 유해/우려물질 및 허용량 확인 必 - 재활용 원료 기준의 부합성 확인 必 - 재사용 가능한 패키징에 대해 안전성 및 위생 관련 요건 부합 必 - 시험결과, 기술문서, 적합성 선언서 작성 및 보관 의무 (시장 참여자별 확인 必) - EPR 정보제공을 위한 등록 행정업무 및 대리인 지정
~2028	표시 체계 구축	- 패키징 재사용량 및 재활용 가능성 데이터 관리 必 - 조화된 라벨 및 수출국 라벨링 표시를 위한 기준 충족 必
~2030	재활용성 성능 개선 및 감축, 재사용 확대	- PCR 사용 및 DfR 등급 (≥C등급), 포장 최소화 -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 및 생분해성 라벨 도입 준비 - 전 주기 데이터 추적 체계 도입 준비 (디지털 라벨링 및 데이터 기입) - 감축/재사용/재활용 설정된 목표 대비 달성률 데이터 제공
~2035	실적 및 데이터 체계 고도화	대규모 재활용 평가 대응 성과 데이터 확보
~2038		DfR 등급 기준 상향 (≥B등급)
~2040		감축, 재사용과 재활용 실적 고도화

7. PPWR의 현황 및 향후 방향성

2024년 12월 최종 표결을 통해 PPWR이 EU 이사회에서 공식 채택되었지만, 일부 회원국과 산업계에서는 여전히 제도 실행의 현실성을 둘러싼 우려가 감지된다. 오스트리아와 몰타는 기권했고, 찬성표를 던진 이탈리아와 핀란드도 이후 비공식적으로 감축 및 재사용 목표 완화를 요구하며 입장을 유보하는 기류를 보였다. 산업계에서도 준비 부족에 대한 우려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특히 독일의 17개 산업 단체는 시행일을 기존 2026년 8월에서 2027년 1월로 미룰 것을 공식 요청하며, 법적·회계적 혼선과 EPR 제도의 이행 불확실성을 지적했다. PPWR 규정은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존재하며, 세부 시행 규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

EU회원국 PPWR 최종 표결 결과



입장	해당 국가명	분석
찬성	프랑스, 독일 등	- 환경보호, 순환경제 촉진, EU 공동 목표 달성 - 산업계 우려에도 환경정책 강화 및 단일시장 규범 통일에 공감
	이탈리아, 핀란드	비공식 문서 배포: 재사용·감축 목표 하향 조정 요구
기권	오스트리아	공식 성명 발표: PPWR에 따른 행정 부담 증가, 비용 상승, 실질적 환경 효과 부족, 재사용 규정 실효성 문제 등 제기
	몰타	

[산업협회 동향] PPWR 시행 연기 요청 (2025.7.11.)

- 17개 독일 폐기물·포장·소비재 협회, PPWR 시행일(2026.8.12) → 2027.1.1로 연기 요구
- 사유: ① 연도 중간 시행 시 법적·회계적 혼선 및 EPR 관련 실무 혼선 가중
② 독일 국내 이행법 및 EU 차원의 세부 기준 미비



8. PPWR과 보완되는 패키징 규정

PPWR은 포장재의 설계, 생산, 표시, 데이터 관리, 사용 후 재활용 및 폐기 등 전 과정을 아우르는 매우 포괄적인 규제이며, 세부 규정 및 하위 지침들과 보완된다. 「포장재 식별체계 구축에 관한 결정」, 「환경 보고 분야의 절차 규칙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의 결정」, 「중금속 농도 수준과 관련하여 플라스틱 상자 및 플라스틱 팔레트에 대한 면제 조건을 설정하는 결정」, 「정보 사회 서비스에 관한 기술 규정 및 규칙 분야의 정보 제공 절차 관련 지침」 등 **표시 및 식별, 데이터 보고, 면제, 정보제공 절차**에 관련된 하위 규제 및 주요 관리 영역을 법적 틀 안에서 망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기업들은 PPWR 외 하위 세부 규정 및 하위 지침들을 기반으로 PPWR을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분류	명칭	법적 형태	주요 내용	시사점
표시 및 식별	포장재 식별체계 구축에 관한 결정(97/129/EC)	결정 (Decision)	PPWR 부속서 II의 포장재별 분류 및 재질 식별 체계 관련 상세 규정	정확한 자재 식별 및 분류 코드 부착 필요 → 수출 시 라벨 오류로 리콜 가능성
데이터 보고	환경 보고 분야의 절차 규칙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의 결정(DECISION (EU) 2018/853)	결정 (Decision)	회원국의 환경 관련 지침(포장, 폐기물 등) 이행 현황 보고 양식과 절차 표준화	환경 규제 관련 정보 제출이 간접적으로 기업 책임으로 확장
	폐기물 부문의 특정 지침 이행에 대한 회원국 보고서 설문지 관련 집행 결정(DECISION (EU) 2021/2252)	집행 결정 (Implementing decision)	PPWR의 이행 상황 점검 및 성과 평가를 위한 회원국 보고 체계와 연결	업계는 직접 영향 없지만 제출 데이터가 국가 통계에 반영됨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관련 형식 수립 및 이 결정을 개정하는 집행 결정(DECISION (EU) 2019/665)	집행 결정 (Implementing decision)	PPWR에서 요구하는 데이터 보고 및 관리(제57조 등) 양식 표준화	기계 판독 가능한 양식 제출 필요
	경량 플라스틱 비닐봉투의 연간 소비량 계산 방법론을 정하는 집행 결정(DECISION (EU) 2018/896)	집행 결정 (Implementing decision)	PPWR 내 경량 플라스틱 백 사용량 집계, 감축 목표 설정 및 보고 의무	경량 포장재(샘플 키트, 쇼핑백 등) 사용 기업 주의
면제	중금속 농도 수준과 관련하여 플라스틱 상자 및 플라스틱 팔레트에 대한 면제 조건을 설정하는 결정(2009/292/EC)	결정 (Decision)	플라스틱 상자·팔레트 내 중금속 농도 제한 예외 조건 명확화	B2B 수출용 산업 포장에 적용 가능성
	중금속 농도 수준과 관련하여 유리 포장에 대한 면제 조건을 설정하는 결정(2006/340/EC)	결정 (Decision)	유리 포장 내 중금속 농도 제한 예외 조건 명확화	고급 화장품의 컬러 유리병 등 추가 확인 필요
정보제공 절차	정보 사회 서비스에 관한 기술 규정 및 규칙 분야의 정보 제공 절차 관련 지침(DIRECTIVE (EU) 2015/1535)	지침 (Directive)	디지털 라벨, 전자상거래 정보 전달 관련	디지털 마킹/QR 코드 등 기술 규격 사전 조율 필요



PPWR 주요 조항 분석

PPWR은 총 71개의 조항과 부속서 XIII까지 포함되어 있는 매우 포괄적인 규정으로 주요 요구조건과 의무 사항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PPWR의 주요 요구 조건으로는 2030년까지 전체 포장재 폐기물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특정 부문에서 재사용 및 리필 포장재의 의무적인 비율을 달성해야 한다. 또한,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에 의무적인 최소 재활용 원료 함유량을 적용하고,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포장재가 재활용 가능하도록 설계 및 라벨링되어야 한다. 이러한 강력한 의무사항들은 제조사부터 소비자까지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포장재 사용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며, 미준수 시 유럽 시장 진입에 제약이 가해질 예정이다.



1. PPWR의 구조

PPWR 규정은 먼저 총칙(제1장)에서 목적과 정의를 명확히 하여 기본 틀을 세운 뒤, 필수 요구사항(제2장)을 통해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포장재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설계 기준(재활용성, 재활용 재료 함량, 최소화, 유해 물질 제한 등)을 엄격히 규정한다. 이어서 정보 요구사항(제3장)으로 라벨링을 통해 소비자의 올바른 분리배출 및 재사용을 유도하고, 재사용 및 리필(제4장)에서는 특정 포장재에 대한 구체적인 재사용 목표와 시스템 구축 의무를 부여하여 폐기물 감축을 최우선으로 함을 명시한다. 마지막으로 폐기물 관리(제5장)는 회원국 차원의 감축 및 재활용 목표를 제시하고, 생산자 책임(제6장)을 통해 생산자가 포장재의 전 생애 주기 비용과 환경적 책임을 지도록 하며, 이 모든 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강제하기 위한 적합성 평가, 시장 감시, 데이터 보고 및 벌칙 조항(제7장-제13장)으로 전체 구조가 완성된다. 먼저 충족해야 하는 기본 요건들은 최소한의 설계 기준으로 2026년 시행일자부터 준수해야 하며, 이후 장기 목표 및 시스템 변화 및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해서는 향후 점진적으로 상세한 규제가 도입된 이후 준수해야 하는 의무 사항들로 상세한 의무사항 또는 지침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

CHAPTER	ARTICLE	KEY WORD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 범위 제3조: 정의 제4조: 자유로운 이동	기본 원칙
제2장 지속가능성 요구사항	제5조: 패키징에 대한 물질 요구 사항(유해물질) 제6조: 재활용 가능한 패키징(재활용성) 제7조: 플라스틱 패키징의 재활용 최소 함량 제8조: 플라스틱 패키징의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 원료 제9조: 생분해성 패키징 제10조: 포장 최소화 제11조: 재사용 가능 패키징	기본 요건
제3장 라벨링, 마케팅	제12조: 패키징 라벨링 제13조: 포장 폐기물 수거함 라벨링 제14조: 환경성 주장	소비자·시장 커뮤니케이션 요건
제4장 일반 의무	제15조: 제조사의 의무 제16조: 공급사의 의무 제17조: 공인 대리인의 의무 제18조: 수입사의 의무 제19조: 유통업자의 의무 제20조: 풀필먼트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제21조: 수입사 및 유통업자에게 제조사 의무가 적용되는 경우 제22조: 경제 주체의 식별 제23조: 포장 폐기물 관리자의 정보 제공 의무	시장 참여자 의무
제5장 포장 및 포장폐기물 저감을 위한 경제 주체의 의무	제24조: 과대포장 관련 의무 제25조: 특정 패키징 형식 사용에 대한 제한 제26조: 재사용 가능 패키징에 관한 의무 제27조: 재사용 시스템에 관한 의무 제28조: 리필에 관한 의무 제29조: 재사용 목표 제30조: 재사용 목표 달성 계산 규칙 제31조: 재사용 목표에 대한 관할당국 보고 제32조: 테이크어웨이 부문의 리필 의무 제33조: 테이크어웨이 부문의 재사용 제공 의무	폐기물 저감 의무

CHAPTER	ARTICLE	KEY WORD
제6장 플라스틱 운송 봉투	제34조: 플라스틱 운송 봉투	특수 품목 규제(국가 의무)
제7장 패키징 적합성	제35조: 시험, 측정 및 계산 방법 제36조: 적합성 추정 제37조: 공통 기술 사양 제38조: 적합성 평가 절차 제39조: EU 적합성 선언	적합성 평가 및 인증 체계
제8장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관리	제40조: 관할당국 제41조: 조기 경고 보고서 제42조: 폐기물 관리 계획 및 방지 프로그램 제43조: 감축 목표 제44조: 생산자등록부 제45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PR) 제46조: 생산자책임조직 제47조: EPR 이행 승인 제48조: 반환 및 수거 시스템 제49조: 의무 수거 제50조: 보증금 반환 제도 제51조: 재사용 및 리필 제52조: 재활용 목표 제53조: 재사용 목표 달성도 계산 규칙 제54조: 재사용 포함 시 재활용 목표 달성 계산 규칙 제55조: 포장폐기물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정보 제56조: 데이터 보고 제57조: 패키징 데이터베이스	폐기물 데이터 관리, 생산자 책임 및 목표 관리
제9장 세이프가드 절차	제58조: 국가 차원의 리스크 대응 절차 제59조: EU 세이프가드 절차 제60조: 위험을 초래하는 적법한 패키징 제61조: EU 시장 진입 패키징에 대한 통제 제62조: 형식적 불이행	공급망 통상 규제 (국가 대응)
제10장 녹색 공공조달	제63조: 녹색 공공조달	공공조달 (국가 조달)
제11장 위임 권한 및 위원회 절차	제64조: 위임 권한 행사 제65조: 위원회 절차	부속사항 (국가 규정)
제12장 개정 사항	제66조: 규정 2019/1020 개정 제67조: 지침 2019/904 개정	
제13장 최종 조정	제68조: 페널티 제69조: 평가 제70조: 폐지 및 전환기 규정 제71조: 발효 및 적용	처벌 규정

2. 대응 의무 조항에 대한 종합적 분석

PPWR(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제)은 총 7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포장 관련 전반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규제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하단 표는 각 조항별로 EU 회원국과 기업이 준수해야 할 대응 의무 근거 조항(제37조, 39조, 45조, 62조, 68조)별로 분류하였다. 특히, 화장품 산업에 직접적으로 적용되거나 관련이 깊은 조항을 별도로 체크하여, 업계가 선제적으로 준수 및 준비해야 할 주요 항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이하게, 제29조, 43조, 52조 등은 회원국이 달성해야 할 목표를 제시하는 조항으로, 해당 내용이 향후 구체적 법률 또는 추가 규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조항	조항명	의무 주체	대응 의무 근거 조항						화장품 산업 대응 필요 조항
			제37조 공통 기술 사양	제39조 EU 적합성 선언	제45조 EPR	제62조 형식적 불이행	제68조 패널티	제29, 43, 52조 EU 회원국 목표	
1-4	기본 원칙	전체							기본 사항
5	패키징에 대한 물질 요구 사항(유해물질)	기업	●	●					○
6	재활용 가능한 패키징(재활용성)	기업	●	●		●			○
7	플라스틱 패키징의 재활용 최소 함량	기업	●	●		●			○
8	플라스틱 패키징의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 원료	기업	●	●					○
9	생분해성 패키징	기업	●	●					○
10	포장 최소화	기업	●	●					○
11	재사용 가능 패키징	기업	●	●					○
12	패키징 라벨링	기업	●	●		●			○
13	포장 폐기물 수거함 라벨링	국가							X
14	환경성 주장	기업							△(필요시)
15-23	일반 의무(제조사, 공급사, 수입사, 유통사, 풀필먼트 서비스 제공자)	기업				●			○
24	과대포장 관련 의무	기업	●			●	●		○
25	특정 패키징 형식 제한	기업				●	●		○
26	재사용 가능 패키징에 관한 의무	국가	●				●		X
27	재사용 시스템에 관한 의무	기업					●		○
28	리필에 관한 의무	기업				●	●		○
29-30	재사용 목표 및 달성도 계산	기업				●	●	●	○
31	재사용 목표에 대한 관할당국 보고	기업							○
32-33	테이크어웨이 부문 리필 및 재사용 제공 의무	기업				●			X
34	플라스틱 운송 봉투	국가						●	X
35-39	패키징 적합성	기업				●			○
40-42	관할당국 관련 의무사항	국가							X
43	감축 목표	국가			●			●	△(데이터 제공 필요)
44-47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기업			●				○
48-50	보증금반환제도	기업							X
51	재사용 및 리필	국가							X
52	재활용 목표	국가						●	△(데이터 제공 필요)
53-54	재활용 목표 달성도 계산 규칙	국가						●	△(데이터 제공 필요)
55-57	데이터 보고	국가						●	△(데이터 제공 필요)
58-62	세이프가드 절차	기업				●			△(필요시)
63	녹색 공공조달	전체							△(필요시)
64-65	위임 권한 및 위원회 절차	국가							X
66-67	개정 사항	전체							X
68-71	최종 조정	국가					●		△(필요시)

- 대응 의무 주체가 국가인 경우, 화장품 산업 대응 필요 조항에서 제외
- 대응 의무 주체가 전체 또는 기업인 경우에도 화장품 산업의 직접적인 의무가 없는 경우 대응 필요 조항에서 제외

패키징 유형 분류

모든 유형의 패키징은 규제 대상이며, 포장 단계별 기능과 역할에 따라 규제 차등 적용

제3조

정의
Definitions

주요 내용

- 패키징 유형을 크게 포장 단계별 기능과 역할에 따라 구분

포장

경제 운영자가 다른 경제 운영자나 최종 사용자에게 제품을 담거나, 보호하거나, 취급하거나, 배달하거나, 보여주기 위해 사용하도록 의도된 품목을 의미

1차 판매 단위 포장

테이크어웨이 포장 (Take-away packaging)

판매 장소에서 포장하여 다른 장소에서 운송 후 별도의 준비 없이 바로 섭취할 수 있도록 한 포장(ex. 테이크아웃 음료 컵, 도시락 포장)

1차 생산 포장 (Primary production packaging)

1차 생산의 미가공 제품을 포장하는 데 사용하도록 설계 및 의도된 품목(ex. 감자망, 생선 상자)

판매용 포장 (Sales packaging)

판매 시점에서 최종 사용자에게 제품과 포장으로 구성된 판매 단위를 구성하도록 고안된 포장(ex. 음료 캔, 화장품 튜브)

2차 그룹 포장

그룹 포장 (Grouped packaging)

판매 시점에서 특정 수의 판매 단위를 그룹화하도록 고안된 포장(ex. 6캔 묶음 플라스틱, 종이박스)

3차 운송 포장

운송 포장 (Transport packaging)

하나 이상의 판매 단위 또는 판매 단위 그룹의 취급 및 운송을 용이하게 하도록 고안된 포장(ex. 팔레트 랍핑, 택배박스)

전자상거래 포장 (E-commerce packaging)

온라인 판매나 기타 원거리 판매 수단을 통해 최종 사용자에게 제품을 배달하는 데 사용되는 운송용 포장(ex. 택배박스)

패키징 유형별 적용 조항 구분

구분	조항	조항명(조항 설명)	1차 포장	2차 포장	3차 포장
공통 적용 조항	5	패키징에 대한 물질 요구 사항(우려물질의 존재 및 농도가 최소화되도록 제조)	●	●	●
	6	재활용 가능한 패키징(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 필요)	●	●	●
	7	플라스틱 패키징의 재활용 최소 함량(최소 재활용 함량 준수 필수)	●	●	●
	10	포장 최소화(최소한으로 무게와 부피가 줄어들도록 설계)	●	●	●
	12	패키징 라벨링 (소비자가 쉽게 분류할 수 있도록 재료 구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라벨을 표시)	●	●	● ¹⁾
	13	포장 폐기물 수거함 라벨링	●	●	●
차등 적용 조항	24	과대 포장 관련 의무 (2028년 1차 판매용 포장에서 최소 수준으로 빈공간 확보 필요, 2030년 2차/3차 포장에 포장 내 빈 공간 50% 이하로 제한)	●	●	●
	29	재사용 목표(포장의 최소 40%가 재사용 시스템 내에서 재사용 가능한 포장 필수)	●	-	●
	32,33	테이크어웨이 부문 리필 의무, 재사용 제안 의무(소비자에게 재사용 가능한 시스템 제공)	● ²⁾	-	-

1) 포장 라벨링 규제가 적용되는 3차 포장은 전자상거래 포장만을 의미

2) 테이크어웨이 포장에 해당

제 5조부터 제 12조까지 EU 시장에서 기업들이 제품을 생산, 수입, 유통할 때 기본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핵심적인 요건들로, 제 5조부터 제11조는 시장 출시와 직접적인 규제들로, 조항들은 포장재의 설계, 구성, 그리고 재활용성에 대한 기준을 다루며, 제12조는 라벨링과 관련된 정보 제공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다. 즉, 화장품 패키징의 기본 요건을,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기본 요건을 분석했다.

유해물질

유해물질 준수 여부는 EU 시장 접근 조건이며, 기술문서(Annex VII)로 적합성 인증 필수

제5조

패키징에 대한 물질 요구 사항(유해물질)

Requirements for substances in packaging

주요 내용

- 우려물질의 존재 및 농도가 최소화, 폐기물 관리와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부정적 영향 최소화
- 2026년 12월 31일까지 패키징의 재사용/재활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사용 제한을 채택하고 DfR (Design for Recycling) 규정 (제6조 4항)에 반영할 예정
- 포장 또는 포장 구성품에 존재하는 물질로 인한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 크롬의 농도 합계는 100mg/kg 제한

오염물질 함량 제한

Pb

납

+

Cd

카드뮴

+

Hg

수은

+

Cr

크롬¹⁾

≤ 100mg/kg²⁾

Point

- PFAS(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과불화화합물) : 최소 1개 이상의 완전히 불소화된 메틸 (CF_3 -) 또는 메틸렌 ($-\text{CF}_2$ -) 탄소 원자(수소·염소·브롬·아이오딘이 결합되지 않은)를 포함하는 모든 물질
- PFAS는 환경·인체 위해성 높아 엄격한 규제 적용, 식품포장 등에서 사용 제한
- 표적 PFAS 분석 : PFAS 화합물들이 시료에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석기 등으로 측정

식품 접촉 패키지 PFAS 함량 제한

구분	측정 대상/방법	한계값	비고
(a)	표적 PFAS 분석으로 측정한 모든 PFAS (중합체 PFAS 제외)	25 ppb	개별 PFAS별 한계치
(b)	(필요시 전구체 분해 후) 표적 PFAS 분석의 합계 (중합체 PFAS 제외)	250 ppb	여러 PFAS의 합산 한계치
(c)	PFAS 전체 (중합체 PFAS 포함)	50 ppm	총 불소가 50 mg/kg 초과 시, 불소 함량 증빙자료 제공 필요

1) 크롬 중 인체에 유해한 '6가 크롬'이 해당, 국내 기준과도 유사

2) 100mg/kg은 100ppm 과 동일한 의미이며, mg/kg은 제품 및 패키징의 용량관점에서 많이 사용되고, ppm은 주로 화학물질의 용량을 나타낼 때 많이 사용

여기서 잠깐!



PPWR에서 패키징 내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유해물질(제5조)의 구체적인 범위(예: PFAS, 중금속)와 국내 화장품 포장재가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패키징 공급업체로부터 해당 유해 물질의 불검출 또는 기준치 이하 함량을 증명하는 정보와 문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공급업체의 의무 제16조). 관련 유해물질 리스트는 (EC) 규정 1907/2006의 부록 XVII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PPWR은 패키징 내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롬의 합 100mg/kg 이하)의 함량을 제한합니다. PFAS의 경우 식품 패키징에 한해 2026년 8월 12일부터 PFAS 기준치 초과 시 EU 시장 출시가 금지됩니다.

유해물질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현재 시점에서는 시험성적서와 적합성 선언서만 필요하나 향후 ‘재활용 저해 물질’ 관련 요구사항이 추가될 예정이므로(Art. 5(3)) 향후 패키징 구성요소별 재질, 포함물질 등을 상세히 적은 패키징 구성표도 추가 제출이 필요합니다.

- ✓ 프랑스의 규제 현황을 참고하면, 환경법전 R543-49조¹⁾에서 ① 포장재의 물질 성분 설명, ② 설계 및 제조 관련 도면, ③ 유럽표준 또는 기타 시험 성적서, ④ 유럽표준 미적용시 기술적 대응 근거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화장품은 접촉 민감 패키징으로 분류되어 EU 화장품법(1223/2009) 규제의 적용 가능성을 추가 고려해야 합니다. 화장품 제품 안전 보고서, CPSR(Cosmetic Product Safety Report)에 따라 화장품과 포장재의 이행 등 상호작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해물질 확인을 위해 XRF 분석을 진행하면서, 적합성 선언서 요구 받을 시에만 시험기관에 의뢰하는 프로세스로 대응하는 것도 무방하나, EU 수출국 소재 감독기관의 법정 문서 제출기한(10~15일 이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① 고위험군 패키징, ② 고강도 규제 국가 위주로 시험 성적서를 미리 확보해두는 한 편, 신속 대응 가능한 시험기관을 사전 섭외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1) [Code de l'environnement](#)

재활용성

EU 시장 진입 및 적합성 검증의 핵심적 수단으로, 2028년 이전까지 PPWR의 세부 기준 마련 예정

제6조

재활용 가능한 패키징(재활용성)

Recyclable packaging

주요 내용

- 2028년 세부 재활용률 기준 및 평가 방법 제정 예정, 2030년부터 적용(재활용성 성능 등급별 시장 진입 제한)
- 재활용성: ① 설계 적합성, ② 수거 가능성, ③ 선별 가능성, ④ 대규모 재활용 (Recycled at scale)가능성의 최소 요건을 충족한 패키징

재활용성 성능 등급¹⁾

패키징 유닛 당 재활용 가능한 비율(%)에 대한 등급(부속서 II)

*단위당 재활용성(중량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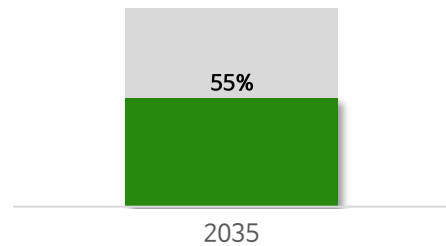


구분	내용
등급제 적용	2030년 : A~C등급 적용 - C등급 미만 시장 출시 불가 2038년 : A·B등급만 사용 가능 - C등급 이하 시장 출시 불가
위임법/집행 규정 제정 계획	2028년 1월 1일까지 위임법 (Delegated acts) 제정 계획 - 재활용성 등급 산정 방식(DfR, Design for Recycling) 마련 2030년까지 집행 규정(Implementing acts) 제정 계획
예외 규정	의약품, 의료기기, 특수식품, 위험물 운송 등
EPR 부담금	등급별 재활용성에 따라 차등 적용
혁신 패키징 ³⁾	사전 신고·계획 제출 시, 5년간 한시적 예외 허용
평가	재활용성 평가, 데이터 공개, 체계적 감독·보고 의무

대규모 재활용 평가²⁾

각패키징 유형의 EU역내 연간 재활용 실적 데이터를 검증하는 제도

*계산 규칙 기준(DECISION (EU) 2019/665)



구분	내용
평가 기준	동일 유형 포장 폐기물 기준 ① EU 인구 75% 이상 거주 지역 인프라에서의 실제 수거·선별·재활용 여부 ② 최소 재활용률 기준(임계치) 이상 실제 재활용 여부
최소 재활용률	2035년 : 55%(설계 단계에서 측정) ⁴⁾
평가 서류	- Chain of Custody(CoC) 기반 적합성 선언서 - 시험 성적서 - 기술문서 - 기타 공식 증빙자료
평가방법론 채택 시기	2030년 : 대규모 재활용 평가 방법론 및 집행법 채택

- 재활용성 성능 등급(recyclability performance grade): 포장 유닛의 모든 구성 요소(본체+부속품)중 재활용 가능한 구성 요소들의 중량 비율(분리/선별 불가능한 부분 제외)로 등급 백분율 산출. 동일 포맷 제품군에 대해 대표 샘플을 통한 간소화 평가 허용 여부는 향후 위임법에서 결정 예정
- 대규모 재활용 (recycled at scale) 평가: 특정 패키징 제품과 동일한 패키징 유형이 실제로 연간 EU 전체 시장에서 얼마나 수거·분류·재활용되고 있는지를 데이터(EPR 보고 데이터/EU 재활용 시설 최종 재활용 공정 직전 지점에서의 실질 폐기물 투입량 데이터)로 검증하는 제도
- 혁신 패키징: 신소재를 사용하여 제조된 포장 형태로, 제품의 보관, 보호, 취급 또는 배송과 같은 포장 기능이 상당히 개선되고 전반적으로 입증 가능한 환경적 이점이 있으나 재활용 시설에서의 호환성이 기술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포장
- European commission, PPWR team,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PPWR), 2024.12.16

재활용 소재

소재별 의무화 + 실시간 트래킹 체계(공급망 추적)로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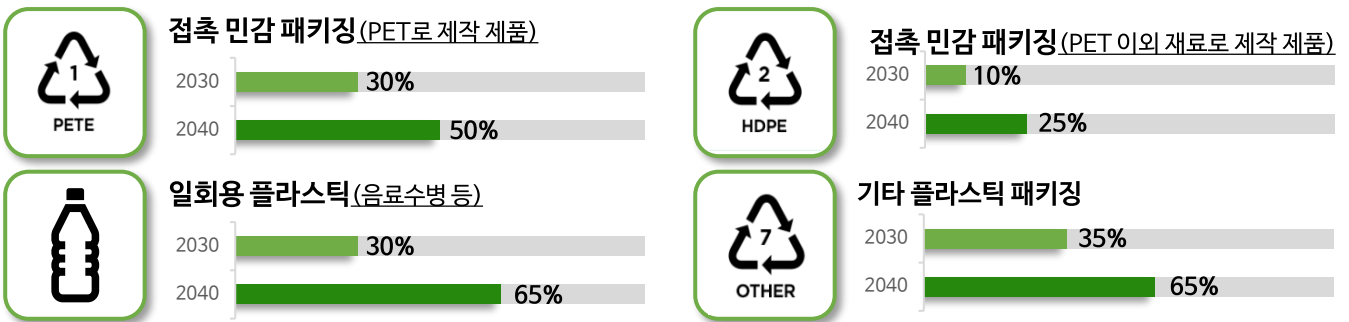
제7조

플라스틱 패키징의 재활용 최소 함량

Minimum recycled content in plastic packaging

주요 내용

- 2026년 PCR 함량 산정 방법론 도입, 2030년부터 PCR 사용 의무 본격 시행 → EPR 차등화 기여금 부과 기준으로 작동
- 2027년 이후부터 PCR 원료의 출처 및 EU 기준에 상응하는 지속가능성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인·검증 필수
- 2026년 전후로 ① 재활용 함량 비율 산정식 및 평가 방법론 ② 고품질 재활용 기준(Standards on high-quality recycling) 설정 예정

최소 재활용 함량 기준¹⁾

세부 규정 구체화 방향

구분	내용
사용 실적 및 기술문서 증빙 필요 (제6항)	2026년 : PCR 비율 산정, 검증 방법론, 기술문서 양식을 정하는 시행법령 채택 예정 ● 플라스틱 패키징 제조업체에 대한 독립적인 제3자 감사 의무 포함 가능
재생원료 확보 시설 기준 확인 필요 (제10항)	지속가능성 기준을 충족하는 재활용 기술을 사용하는 EU 내 시설 ● 위임법령에 따라 개발된 지속가능성 기준과 동등한 기준에 따라 재활용 기술을 사용하는 제3국 내 시설도 가능(제3자 검증을 통한 평가·검증·인증 필요)
예외/면제 기준 조정 예정 (제14항)	특정 재생 플라스틱의 가용성 부족 또는 과도한 가격으로 인해 최소 비율 준수가 지나치게 어려운 경우, 집행위원회는 위임법령을 채택해 해당 비율 조정 가능 ● 화장품 업계 등은 업종 특성을 반영한 예외/면제 조항을 향후 입법 과정에서 적용되는지 지속적인 확인 필요
재생원료 사용 확대 가능성 예고 (제15항)	2032년, 비플라스틱 패키징에 대한 재생원료 사용 확대 방안 또는 목표 설정의 적정성을 평가 예정 ● 향후 비플라스틱 패키징(종이, 유리 등)에 관한 규제 적용 가능성 有

1) 최소 재활용 함량 기준: 개별 패키징 유닛 단위에서 플라스틱 부품들의 총 중량을 기준으로 PCR 함유율 산정(비플라스틱 부분 제외). 이 때 개별 플라스틱 부품이 전체 포장 유닛 총중량의 5% 미만인 경우, 해당 부품은 PCR 최소 함량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

3년 이내(~2028년 2월 12일)에 관련 기준·목표 수립 예정이며, 화장품 산업에서의 적용 가능성이 미미한 것으로 추정됨

제8조

플라스틱 패키징의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 원료

Biobased feedstock in plastic packaging

주요 내용

- 2028년 2월 12일까지,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 관련 구체적인 정의, 지속가능성 요구사항, 목표 등 내용을 포함한 입법안 제정 예정
- 원료 사용은 권장할 예정이지만, 패키징의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 함량 표시는 라벨링 의무 대상이 아님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이란?



옥수수



감자



해조류



제지산업 펄프

분해, 발효, 화학적 변환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

생물량 원료, 유기성 폐기물 또는 부산물과 같은 생물학적 자원으로 만든 플라스틱을 의미
(플라스틱이 생분해성이나 비생분해성이라는 상관 無)



2028년 2월 12일 :

지속 가능성 기준을 고려하여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 포장의 기술 개발 상태와 환경 성과를 검토



검토 후 입법안 제시:

- 플라스틱 패키징의 바이오 기반 원료에 대한 **지속 가능성 요구 사항 결정**
- 플라스틱 패키징에 바이오 기반 원료 **사용을 늘리기 위한 목표를 설정**
- 식품 접촉 포장을 위한 적합한 재활용 기술이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PCR 플라스틱 대신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 원료를 사용하여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을 소개**
- 적절한 경우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의 정의를 수정**

생분해성

생분해성 포장은 일부 제한된 유형에만 허용되며, 산업용 퇴비화 인프라 및 적합성 인증 확보 필수

제9조

생분해성 패키징

Compostable packaging

주요 내용

- 타 폐기물 흐름 재활용성 저해 금지 및 적합성 입증 필수
- 2026년까지 산업용·가정용 생분해 기준 조화 표준 마련 예정
- 원료 사용은 권장하나, 패키징의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 함량 표시는 라벨링 의무 대상이 아님

2026.2.12

2028.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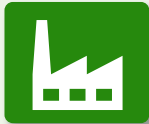
표준 제정

- 유럽 표준화기구에 조화된 표준 마련
- 산업용/가정용 퇴비화 패키징 각각의 세부 기술 사양 준비 시작

적용 의무

- 일부 패키징(과일/채소 라벨 등) 산업용 퇴비화 표준 적용 의무화
- 그 외 패키징은 재활용성 설계 의무화

핵심 개념

구분	 산업용 생분해성 패키징	 가정용 생분해성 패키징
공통사항	● 물질이 특정 조건(산소 유무, 온도, 습도 등)에서 미생물 등의 생물학적 작용에 의해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성질 → 2026년까지 조화 표준(유형별 시간, 온도 기준 등) 수립 예정 ● 생분해성 패키징은 명확한 환경적 이점(티백, 커피 캡슐 등 내용물과 포장의 분리가 어려운 패키징 등)이 있을 경우만 허용 ● 재활용 플라스틱류와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섞일 경우 품질 저하가 일어나는 혼입 오염 문제 (Cross-contamination) 유의 필요	
특징	● 산업시설을 통해서만 분해 가능 ● 국제 EN 13432:2000 표준 존재	● 산업시설 없이도 분해 가능 ● 국제 표준 미비 - 수립 예정
화장품 패키징 적용 사례	● 천연 비누, 페이스 바: PLA 기반 생분해성 필름 또는 전분 계열 포장 ● 샴푸, 컨디셔너, 바디워시: 생분해성 코팅 파우치	-

포장 최소화

기준 초과 패키징은 보고·과징금·EPR 비용 가중 대상

제10조

포장 최소화

Packaging minimisation

주요 내용

- 2030년부터 패키징의 무게, 부피, 층수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포장 성능 기준 미충족 혹은 과대포장 제품 판매 금지
- 예외: 2025년 2월 11일 이전에 등록된 디자인권/상표권 보호 포장 / EU 법에 따라 보호받는 지리적 표시(GI) 제품, 품질인증 제품
- 2027년 포장 최소화 요건의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표준 마련 예정, 기술문서 작성 의무
- 재사용 패키징은 제11조의 추가 요건을 함께 고려 ([32 페이지 참고](#))

평가 원칙 (부속서 IV)

구분	내용
제품 보호	• 제품의 유통부터 폐기까지 손상, 변질 없이 보호 • 물리적/화학적 손상, 오염, 품질 저하 등 모든 위험 방지
포장 제조 공정	• 패키징 설계와 제조·충전 공정의 호환(두께, 형태, 내구성 등 공정상 요구 반영)
물류	• 유통, 운송, 보관, 핸들링 과정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적재 및 운송 가능여부
기능성	• 제품의 용도, 판매 목적에 맞는 기능 보장
정보 제공	• 제품명, 사용법, 바코드, 유통기한 등의 필요한 정보 소비자에게 제공
위생·안전	• 사용자와 제품의 위생과 안전 보장(아동보호, 안전 개봉장치 등 포함)
법적 요구	• 해당 국가 및 EU의 관련 법령 준수
재활용성·재사용성	• PPWR의 재활용성, 재사용성, 재생원료 함량 등 준수

기술 문서 작성 시 필요 내용

1. 패키징의 최소 중량·부피 계산 방법 & 산정 결과

- 동일한 패키징 내에서 생산 배치 간 가능한 변동 사항도 고려해야 하며, 이 점 역시 문서화 필요

2. 더 이상 중량·부피를 줄일 수 없는 설계 요건

- 사용한 설계 평가 방법 설명
- 불필요한 층(layer) 제거 등 모든 감량 기회 분석
- 더 이상 감량이 불가능한 설계적 이유 설명
 - 위생·안전성을 위한 추가 층(layer) 필요
 - 정보 제공을 위한 충분한 표면적 필요 등

3. 평가에 사용된 시험 결과 등의 근거 자료

- 위의 두 가지 작성 요건에 사용된 시험 결과, 연구, 시뮬레이션 등의 객관적 자료·데이터 첨부

제10조 포장 최소화는 기본적으로 패키징의 ‘감축’의 목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패키징의 무게와 부피를 줄이고 불필요한 공간을 최소화하는 것은 제24조 조항을 통해 별도로 구체화하여 다루고 있다. 제24조에서 과대포장에 대한 정의와 판단 기준, 그리고 실질적 대응방안을 상세히 명시하여, 불필요하게 과도한 포장이 이뤄지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과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화장품을 운송, 집합 포장하는 경우에는 제24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잠깐!

소규모 포장재가 대부분인 화장품 업계 (3mL, 10mL, 30mL)의 경우, 한국에서는 30g 이하의 화장품은 규제 예외 대상이지만 EU의 PPWR에서는 예외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EU내에서도 소용량 패키징에 대한 기능적 필요성이나 안전성에 따른 예외 적용 논의는 일부 존재하지만 PPWR의 기본 원칙이 포장 폐기물 감축과 재활용성 확보인 만큼 현행 조문상 소용량 패키징은 별도 예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향후 패키징 중량/부피 측정, 기술문서 작성, DPP 정보 제공 관련 위임/집행법 수립 시 면제 조항이 추가되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DPP 정보 제공 의무화: 2030년 전후 추정)

제24조

과대포장 관련 의무

Obligation related to excessive packaging

주요 내용

- 2030년(또는 집행 규정 발효 3년 후)부터 그룹포장, 운송포장, 전자상거래 포장의 빈 공간 비율 50% 초과 금지
- 2028년부터 판매 포장의 빈 공간 비율 최소화 의무 적용 및 빈 공간 비율 산정 방법론 제정 예정
- 2032년 특정 제품군(화장품 등) 대상 예외 조항 및 별도 기준 도입 필요성 검토

2차(그룹 포장), 3차(운송 포장, 전자상거래 포장)

PPWR의 과대포장 관련 의무(제24조)에 따라 2030년부터 그룹 포장/운송 포장/전자상거래 포장의 빈 공간은 전체 부피의 50% 이하로 본격 제한됩니다. 제품 대비 지나치게 큰 상자나 완충재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제품이 직접 차지하지 않는 모든 공간(완충재 포함)은 ‘빈 공간’으로 산정될 예정입니다. 현행 통관 실무에서는 포장재의 공간비율 등 물리적 요소에 대해 즉각적인 제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포장 빈 공간 관련 증빙 요청은 사후 감시 단계에서 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PPWR의 시장 감시 시스템(ICSMS)과 세관 위험 관리 시스템이 연동될 예정이므로 향후 통관 과정에서도 증빙이 요청될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미정이며, **향후 구체적인 방법론이 확정될 예정(제61조 제4항 참고)**입니다.

- ✓ 2028년까지 공개될 EU 집행법 상의 산정 방식을 참고한 포장 크기 최적화가 필요합니다.
- ✓ **예외·면제 조건(불규칙 형태 제품, 다품목 구성, 액체류, 충격 취약 품목 등)에 해당 하더라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기술문서 구비가 필수적입니다.**

1차(판매용 포장)

과대포장 관련 의무(제24조)에서 판매용 포장(Sales packaging)의 빈 공간 비율을 산정할 때 공간 자체에 대한 경계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빈 공간 비율은 판매용 포장 내부 전체 공간 중에서 실제 제품이 차지하지 않는 여유 공간의 비율을 의미(제24조 4항)합니다.



판매용 포장의 내부 빈 공간

- ✓ 즉, **판매용 포장의 내부 공간(Total internal volume of the sales packaging) 중 실제 내용물(Packaged product)을 제외한 공간을 의미합니다.**
- ✓ 이때 ‘판매용 포장’의 빈 공간은 용기 내부 벽 두께 등을 제외한 **내용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 운송 중 놀림이 발생하거나 내용물 보호를 위한 Headspace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되지만, **화장품 패키징은 현행 기준상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후속 집행법에서 구체적인 빈 공간 산정 방식이 공개될 예정이므로 유관 정보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재사용 가능성

내구성, 위생, 추적 가능성 등을 갖춘 패키징만 '재사용 대상'으로 인정

제11조 재사용 가능 패키징
Reusable packaging

주요 내용

- 재사용 패키징 인정받기 위해서는 내구성(Durability), 위생(Cleanability & Hygiene), 추적 가능성(Traceability) 등 요건 충족 필요
- 2027년 2월 12일까지 이 규정을 보완하여 재사용 가능한 패키징의 순환에 대한 최소 횟수 등 설정

재사용 패키징 인정 요건

구분	내용
내구성	여러 번 재사용될 목적으로 설계, 제작 및 시장에 출시된 패키징
위생(소진/재충전)	품질과 안전을 유지하면서 비우거나 내용물을 꺼내고, 다시 채울 수 있으며, 위생 요건 준수
추적가능성	안전, 올바른 사용, 추적성, 유통기한 등 제품 및 패키징의 특성과 관련된 정보를 라벨 등으로 부착
최소 순환 수 달성	일반적인 사용 조건에서 최대한 여러 차례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패키징
소비자 사항	소비자 건강, 안전, 위생 관련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
재정비 가능성	부속서 VI B부에 따라 재정비가 가능하며, 본래의 기능을 계속 수행
작업 안전성	비우거나 내용물을 꺼내고, 다시 채우는 과정에서 작업자의 건강과 안전 확보
제6조 조건 충족	폐기 시 재활용 가능 패키징에 관한 제6조의 요건을 충족

재사용 패키징의 인정 조건은 PPWR 제11조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이 기준을 토대로 제28조에서는 리필에 관한 구체적인 규칙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제28조는 경제 사업자가 제품 리필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최종 소비자인 고객에게 리필 절차 및 규칙을 반드시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2030년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매장은 매장 내 일부 공간을 리필 스테이션으로 지정·운영해야 하는 기준이 적용되어, 재사용 패키징의 활용이 한층 더 확대될 전망이다. 이처럼 제28조는 향후 대형매장을 보유한 화장품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할 규정이다.

제28조 리필에 관한 의무
Obligations related to refill

주요 내용

- 리필을 통해 제품 구매 가능성을 제공하는 경제 사업자는 최종 사용자에게 리필 규칙 공유 필수
 - 1. 리필을 통해 제공되는 제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용기 유형
 - 2. 리필에 대한 위생 기준
 - 3. 1번 규칙에서 언급된 용기의 사용과 관련된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최종 사용자의 책임
- 부적합 용기 제공 시 보증금 제도 도입을 요구하며, 비위생적 용기는 리필을 거부 가능
- 2030년부터 400m² 초과 대형 매장은 면적의 10%를 리필 스테이션에 할당하도록 유도해 리필 인프라 확대를 지원

라벨링

라벨링은 법적 책임이 수반되는 정보 제공 의무이며, 디지털 방식으로 정보 제공 범위 및 방안 확장 중

제12조 패키징 라벨링 Labelling of packag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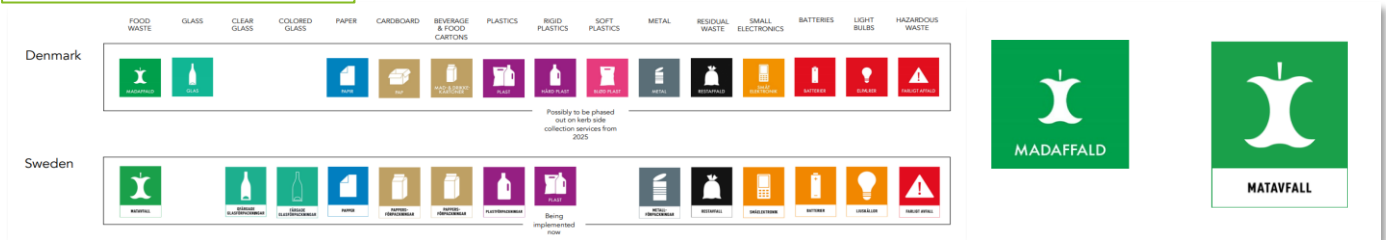
주요 내용

- 2028년부터 모든 패키징에 재질, 분리배출 방법 등을 포함한 조화된(Harmonised) 라벨 부착 의무화
- 부착이 어려운 소형 패키징, 그룹 포장에 일반 라벨 또는 디지털 라벨 부착 필요
- 2026년에 패키징 라벨링 상세 요건 및 디지털 표기 방법 관련 위임법(Delegated acts) 제정 예정

- 조화된(Harmonised) 라벨은 연령·언어 능력 등과 관계 없이 모든 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디자인
- 라벨 정보는 최종 사용자/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 요구(제12조 제4항, 제55조 제2항 등):
수출국 규정에 맞게 조화된 라벨 커스터마이징 필요

Point

조화된 라벨 도안 예시



패키징 유형별 적용 조항 구분

항목	일반 라벨	디지털 라벨
소비자 분리배출 안내	●	●
포장 구성요소별 배출 목적지 정보		○
오해·혼동 유발 라벨/마크/문구 금지	●	●
(해당 시)재사용 가능 여부	●	●
(해당 시)생분해성 관련 정보	●	
재사용 인프라 관련 정보(수거지점, 현재 위치, 회전 횟수 등)		●*
(해당 시)재활용/PCR 함량 정보	●	●
(해당 시)유해물질 정보		●
EPR 제도 이행 여부		●
(해당 시) 보증금 반환제(DRS) 관련 정보	●	
기타 추가 정보(EU 회원국 언어 등)	●	

● - 의무 사항, ○ - 권장 사항(선택)

* 개방 루프 시스템은 비대상

PPWR 서문(70)에서 언급된 것처럼 포장된 제품이 DPP(Digital Product Passport)를 요구하는 다른 EU의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 DPP를 사용하여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향후 EU 국가들은 DPP 관련 규정을 마련 할 것으로 예상되며, 화장품 산업에서도 대비가 필요하다.

DPP(Digital Product Pass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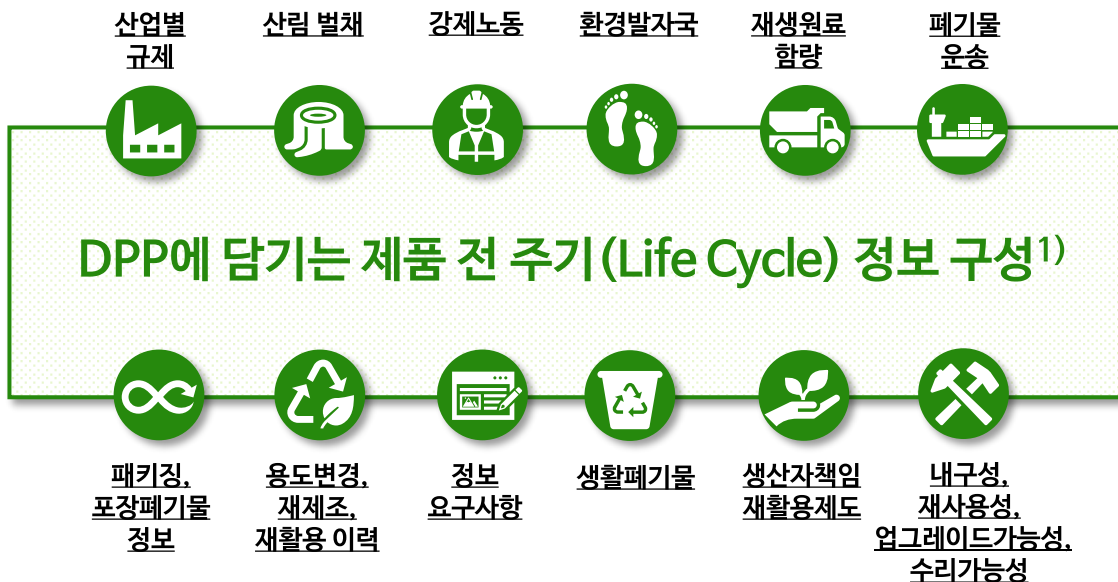
주요 내용

- DPP는 제품 또는 패키징에 대한 주요 정보를 디지털 방식(QR코드, 표준화된 데이터 캐리어 등)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 퇴비화 여부, 재사용 가능성, 유해물질 포함 여부, DRS 적용 여부 등 특수 속성에 대해서 QR코드 등의 디지털 방식으로 추가 정보 제공 의무
- 장애인 포함, 회원국 언어로 쉽게 확인 가능하며, 온라인 판매제품에도 디지털 라벨 부착 필요

Point

- PPWR 본문에 포함된 하위 제도는 아니나, EPR(Regulation (EU) 2024/1781) 등 타 EU 법률에서 요구하는 모든 디지털 방식의 정보 제공 필수(서문 70)

→ EPR의 요구사항을 참고하여 화장품 패키징에 적용될 정보 요소 제공 준비 필요



화장품 산업과 DPP

7th

“화장품이 DPP 준수 대상 7위에 올라 있어.

이르면 2027년, 늦어도 2030년까지는 DPP 준수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할 것²⁾

대표 사례³⁾

로레알

성분 출처를 추적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

라로슈포제

개인 맞춤형 스킨케어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활용 예시³⁾

글로벌 위조 방지 포장 시장 확대

DPP 도입 및 영향과 관련된
잠재적 이점은 명확

1) 국회미래연구원, 디지털제품여권 도입에 관한 미래전망 및 대응방안, 2023

2) MINTEL, “Digital Product Passports: How Retailers Can Turn Compliance to Consumer-focused Value”, 2025

3) SPHERITY, “Beautifying the Future: Unleashing the Potential of Digital Product Passports in the Cosmetics Industry”, 2023

여기서 잠깐!



2028년부터 적용될 PPWR의 EU 라벨(제12조)에는 제품에 부착되는 EU 조화 라벨과 QR코드 등 디지털 라벨로 구성되어야 하며, 재질별 분리배출 정보 외에도 포장 유형에 따른 재사용 가능 여부, 유해물질 포함 여부, 생분해성, 보증금 반환제 적용, EPR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분리배출 표시제도와 비교했을 때 주요 차이점은 국내의 라벨링이 재질 및 분리배출 방법을 소비자에게 안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EU의 라벨링은 소비자뿐 아니라 리필스테이션 운영자, 회수·재활용업체 등 전체 순환경제 참여자들이 포장재의 재사용·재활용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더 나아가, 현재 PPWR이 EU 공통 라벨링(제12조)을 따르게 되면 EU 국가별 라벨링 의무와 호환성에 대한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PPWR 규정 내에 '수출국 최종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언어 제공 의무'가 명시되어 있어 수출국 언어 제공은 반드시 필요하며, PPWR은 규정으로서 EU 회원국의 국내법보다 상위 법안으로 PPWR의 기준을 따르면 되지만, 전환기에는 국내법을 따르는 것이 더 맞습니다. 현재 이탈리아, 포르투갈과 같은 국가들은 까다로운 자체 규정을 철회하거나 수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12일까지 라벨링 요건과 형식에 대한 사양을 확립할 예정이며, EU 공통 라벨링을 도입하여 통일성을 높이려 할 것입니다.

- ✓ 참고로, 프랑스에는 프랑스-EU회원국 라벨 상호 인정 조항이 있으나 일부 EU 회원국 유관 법규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EU법의 기본 원칙은 소급 적용 금지(non-retroactivity principle)이나, 라벨링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3년 유예 및 소급 적용을 언급(제12조 12항)하고 있습니다. EU 조화 라벨의 가장 빠른 시행일은 2028년 8월 12일이며, 이행법의 채택이 지연되지 않고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2031년 8월 11일을 소급 적용 기한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가장 빠른 적용 시나리오에 해당하며, 실제 시행일은 이행법의 채택 시점에 따라 보다 늦춰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2031년을 기준으로 사전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EU에서 강화되고 있는 '그린 클레임 지침(Green Claims Directive)'은 기업의 환경 관련 주장이 과학적이고 검증 가능한 증거에 기반해야 함을 요구하며, 모호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그린워싱)을 엄격히 규제합니다. 화장품 포장재에 '재활용 가능', '친환경' 등의 문구를 사용할 경우, PPWR의 재활용성 등급(A, B, C)이나 재생 원료 함량 등 구체적인 수치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친환경'이라는 포괄적인 표현보다는, "PPWR 기준에 따라 80% 재활용 가능한 용기", "30% PCR 플라스틱 함유"와 같이 투명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 요건에 이어 시장 참여자의 의무와 중요 요건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중요 요건으로는 특정 패키징 형식 사용에 대한 제한, 재사용 시스템에 관한 의무, 재사용 목표, EU 적합성 선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가 있다.

시장 참여자의 의무

EU회원국별 목표 달성을 위한 경제 운영자(Economic Operator)들은 공통 의무 및 역할별 책임을 가짐

제15-23조 일반 의무(제조사, 공급사, 수입사, 유통사, 풀필먼트 서비스 제공자)

Obligations of manufacturers, suppliers, importers, distributors, fulfilment service providers

주요 내용

- 시장 참여자들은 ① 감축/재사용/재활용 목표 이행 및 실적 제출, ② 제5조부터 제12조, 부속서 VII에서 요구되는 기술 문서 및 적합성 선언서 작성·보관, ③ 당국 요청 시 자료 제출 및 협조, ④ 시정 조치 이행 의무와 관련하여 주체별 책임과 역할을 가짐

주체별 역할

주체	주요 책임/역할	적합성 평가 및 선언, 기술문서	정보 표시 의무	시정조치 의무	당국 요청 시 자료 제출/협조 의무
공급업체 (제16조)	적합성 입증에 필요한 제5조부터 제11조 요건 관련 정보 및 기술문서 제조업체에 제공	-	-	-	-
제조업체 (제15조)	제5조부터 제12조 요건 충족한 패키징만 출시	작성 및 보관(주체)	식별정보 및 제조사 정보 표시, QR코드 등 디지털 매체 활용 가능	요건 미달 시 시정조치, 회수·리콜, 당국 통보 및 협조	자료 전자/서면 제공(10일 내), 당국 협조
수입자 (제18조)		제조업체가 작성한 문서 사본 보관 및 제출(작성 권한 없음)	수입자 정보 표시(명칭, 주소 등), 문서/디지털 매체 활용 가능		
유통업체 (제19조)	제5조부터 제12조에 규정된 요건을 준수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보장	-	정보 표시 확인(명확성·가독성 등)		자료 확보 및 제출, 당국 협조
풀필먼트 서비스 제공자 (제20조)	창고보관·취급·포장·발송 등 과정에서 패키징의 요건 미충족 방지	-	-	-	-

구분	법적 정의	주요 역할 및 책임
공인 대리인 (제17조)	제조업체의 법적 대리인	- 제조업체의 규제 대응 보조 ✓ 문서보관 및 당국 대리 대응 책임
EPR 공인 대리인 (제44-45조)	생산자의 EPR 등록·보고 대행자	- EPR 대상 생산자의 등록/보고/법적 책임 대리 ✓ EPR 등록·납부 및 행정 업무 대행
생산자책임이행조직 (제46조)	생산자의 EPR 의무(수거, 재활용, 보고 등)를 이행 조직 차원에서 수행	- 복수 생산자의 EPR 의무 집합적 이행 지원 ✓ 기술문서 수집·작성·제출 대행 ✓ 소비자 혼란 방지를 위한 라벨링·표시 체계 관리 ✓ 패키징 재활용 실적 보고

제한·금지

1회용 포장·샘플 키트 금지 조치: 화장품 브랜드 마케팅·프로모션 등에 사용되는 1회용 포장 용기 재편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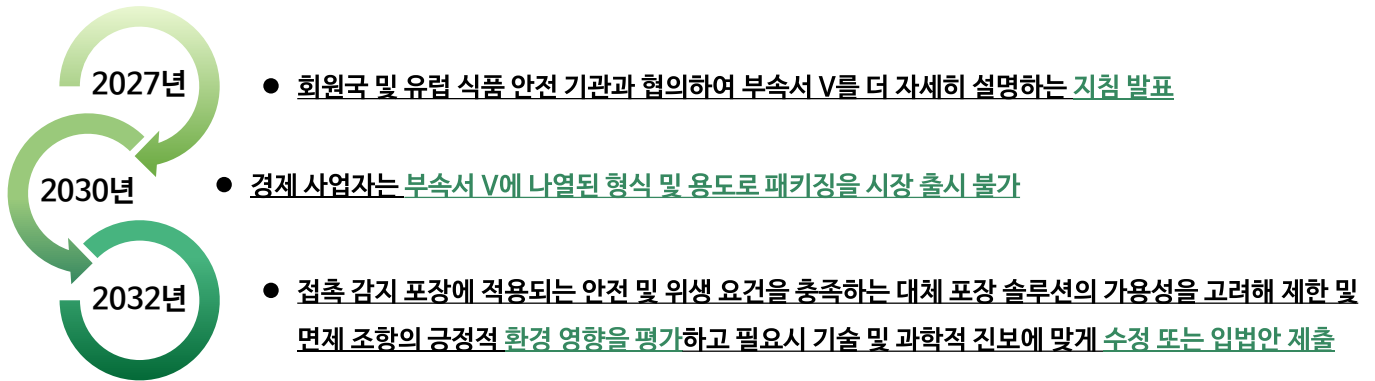
제25조

특정 패키징 형식 사용에 대한 제한

Restrictions on use of certain packaging formats

주요 내용

- 2030년 1월 1일부터 경제 사업자는 부속서 V에 나열된 형식 및 용도로 패키징 시장에 출시 불가
- 2027년 2월 12일까지 부속서 V 관련 세부 지침 발표 예정, 2032년 2월 12일까지 긍정적 환경 영향을 평가하여 개정 예정



부속서 V: 포장 형식 사용 제한

- ❌ 1. 일회용 플라스틱 그룹 포장 (결속 필름, 수축 포장)
단, 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필수 그룹 포장은 가능
- ❌ 2. 가공되지 않은 신선 과일·채소용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 (그물망, 봉지 등)
단, 1.5kg 미만의 신선 과일 및 채소 소포장 시,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 가능
- ❌ 3. 호텔, 레스토랑, 카페 내 현장 소비용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 (일회용 컵 등)
단, 식수 공급이 불가능한 업장은 가능
- ❌ 4. 호텔, 레스토랑, 카페 내 조미료·소스 등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 (작은 용기 등)
단, 즉석섭취용 테이크아웃 음식과 함께 제공되는 경우, 병원·클리닉·요양원 등 개인별 위생이 필수인 의료기관에서 안전·위생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능
- ❌ 5. 숙박업 (개별 예약)용 일회용 포장 (샴푸, 바디로션 등)
단, NACE Rev. 2¹⁾로 분류되는 숙박업에서의 일회용 위생용품의 경우 가능
- ❌ 6. 초경량 플라스틱 쇼핑백 (식품용 얇은 비닐 봉지 등)
단, 위생상 필요하거나 식품 낭비 방지를 위해 식품 판매 시 제공되는 경우 가능

화장품 산업 관련 항목



1. 일회용 플라스틱 그룹 포장

두 개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편의 포장 등



5. 숙박업 (개별 예약)용 일회용 포장

1회용 샴푸, 로션, 비누 등
호텔 어메니티용 화장품

숙박업에서의 어메니티용 화장품을 포함한
일회용 화장품 패키징 제한에 따른 대응 전략 수립 필요

1) NACE Rev. 2 : 경제 활동의 통계적 분류에 따른 숙박 및 식품 서비스 활동을 의미

재사용 인프라

세척, 회수, 재충전 시스템을 포함한 재사용 인프라 구축 필수

제27조

재사용 시스템에 관한 의무

Obligation related to re-use systems

주요 내용

- 재사용 시스템: 회수·세척·재충전이 반복적으로 가능한 순환 체계(부속서 VI의 요구사항 참고)
- 재사용 시스템의 운영 모델: 폐쇄/개방 루프 → 회수·세척·재충전이 반복적으로 작동하고, 전체 주기 추적·검증이 가능
- 재사용 패키징에 대한 재사용 안내 라벨 부착 의무, QR코드 등 디지털 정보(시스템 정보, 수거지점, 회전수) 제공 의무, 연간 실적 데이터(회전수, 수거율, 판매량 등) 보고 체계 구축 의무 존재

재사용 시스템의 필수 요건(부속서 VI)

구분	내용
명확한 거버넌스 구조	역할, 소유권, 운영 방식 등 규정
공정한 참여 조건	모든 경제주체·소비자에게 평등한 접근 보장
최소 회전수 달성	유형별 최소 사용 횟수 기준 충족 (2027년까지 도입 예정)
운영 규칙 명확화	포장 유형, 사용·수거·보관·충전·재정비 등 구체적 규칙 마련
패키징 회수율 제고	인센티브 제공 등
공정한 분배	비용·이익의 공정한 분배
책임이행	확장생산자책임(EPR) 이행
데이터 관리	회전수, 수거율, 판매량 등 실적 데이터 보고 체계 구축
포장 설계 표준화	합의된 사양 또는 표준에 따라 패키징 설계

재사용 시스템 운영 체계

폐쇄 루프(Closed-loop) 시스템

- 소유권 변동 없이 한정된 참여자(예: 특정 유통망) 내에서 패키징이 순환(운영자 필수)
- 재활용성 성능 A등급 패키징
- 역물류(Reverse Logistics) 구축 의무
- 지정 수거지점에 패키징 반납 의무

개방 루프(Open-loop) 시스템

- 불특정 다수 참여자 간 소유권이 바뀌며 패키징이 순환(운영자 없는 경우 일부 요건 면제)
- 재활용성 성능 B, C 등급 패키징
- 시스템 참여, 패키징 재정비 후 재사용, 필요시 제3자 위임 가능

회수·분리수거 및 실적 관리

- Annex VI Part A(f): 회전수, 수거율, 거부 건수, 판매량, 신규 투입량, 수명 종료 패키징 등 데이터 관리 및 보고 의무
- Article 57: 회원국은 패키징 실적 데이터베이스 구축, 산출 및 검증 방법론 마련, 정기적 데이터 보고 의무
- Article 44: 생산자 및 시스템 운영자는 EPR 체계 하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연 1회 이상 실적 보고
- Article 11(3): 재사용 패키징의 기술문서에 데이터 근거 및 실적 포함

재사용 목표

화장품 패키징의 판매용 포장(1차 포장)은 재사용 대상이 아니나, 운송용 외부 포장은 재사용 의무 존재

제29-31조 재사용 목표 및 달성도 계산 Re-use targe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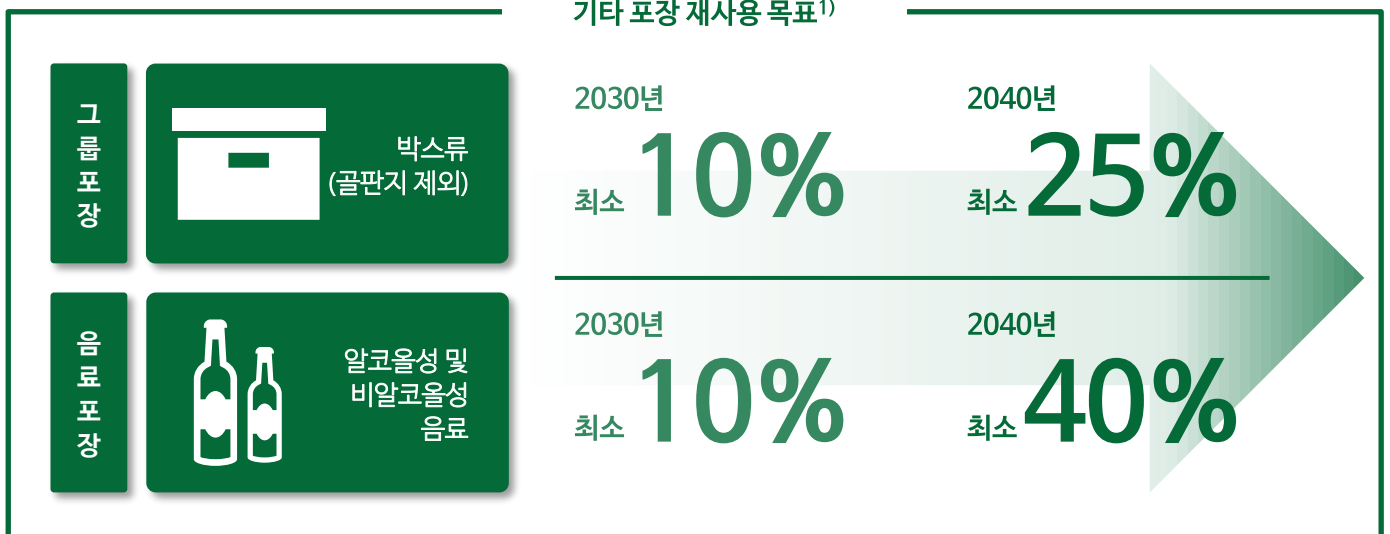
주요 내용

- 2030년부터 포장 유형별(운송 및 판매, 그룹 포장, 음료포장)로 단계별 재사용 목표 부과: B2B 물류 포장, 2차 외포장, 그룹 포장 대상
- 소형 유통업체(100m² 이하) 및 마이크로 기업에 대해 재사용 의무를 면제하나, '같은 브랜드 소속 매장' 등은 하나의 그룹으로 규제
- 유통사를 중심으로 재사용 의무 할당 예정: 재사용 비중 및 시스템 운영 실적 제출 요구 → EU 수출기업에도 의무 발생
- 명시된 목표 달성을 입증하기 위해 포장을 사용하는 경제 운영자는 각 목표에 대해 다음을 별도로 계산 필수(2027년 방법론 수립 예정)
- 2030년부터 재사용 목표 달성에 관한 데이터가 포함된 보고서를 제40조에 언급된 유관 기관에 매 회계연도마다 제출 필요

운송 및 판매용 포장 재사용 목표



기타 포장 재사용 목표¹⁾



1) 해당 재사용 목표 수치는 운송용 또는 판매용 포장에 적용되는 포장 용기를 사용하는 경제 운영자가, 이 포장재를 재사용 시스템 내에서 실제로 재사용되도록 해야 하는 비율을 의미

DoC(Declaration of Conformity)

공급망 전체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로서 EU 시장 내 유통 제한·감시 조치의 핵심 근거로 기능

제35-39조

패키징 적합성

Conformity of packaging

주요 내용

- 패키징 제품의 PPWR 제5조-제12조 및 부속서 VII 요건 준수를 적합성 선언서(DoC, Declaration of Conformity) 형태로 인증 필수
- EU 적합성 선언서에 제조업체의 공인 대리인 또는 수입업체를 명시해야 하며, 공인대리인 없는 경우 소송 대상

관련 조항

이행의무 준수 조항

제2조 적용 범위
(Scope)제3조 정의
(Definitions)제4조 자유로운 이동
(Free movement)

정보 및 문서 요건 충족 조항

제5조 패키징에 대한 물질 요구 사항(유해물질)
(Requirements for substances in packaging)제9조 생분해성 패키징
(Compostable packaging)제6조 재활용 가능한 패키징(재활용성)
(Recyclable packaging)제10조 포장 최소화
(Packaging minimisation)제7조 플라스틱 패키징의 재활용 최소 함량
(Minimum recycled content in plastic packaging)제11조 재사용 가능 패키징
(Reusable packaging)제8조 플라스틱 패키징의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 원료
(Biobased feedstock in plastic packaging)제12조 패키징 라벨링
(Labelling of packaging)

적합성 평가 절차

단계	주요 내용
1. 내부생산관리	제조업체가 단독 책임 하에 제2~4조 이행 의무 및 5~12조 포장 규정 충족 선언
2. 기술 문서	패키징 요건 준수 증빙을 위한 하단 서류 작성 - 포장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과 포장의 용도 - 개념 설계, 제조 도면 및 구성 요소의 재료 및 이해하는 데 필요한 설명 및 해설 - 목록(제36, 37조 언급된 사양, 측정 또는 계산 기술 사양, 표준이나 공통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1항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채택한 솔루션에 대한 설명) - 제6조, 제10조 및 제11조에 규정된 평가가 어떻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한 질적 설명 - 시험 보고서
3. 제조	제조 공정 및 모니터링으로 요구사항 준수 보장
4. 적합성 선언	적합성 선언서 작성 및 보관(일회용 포장 5년, 재사용 가능 포장 10년), 사본은 당국에 제공
5. 공인 대리인	대리인이 제조업체 책임 하에 기술 문서 보관 가능(위임장 작성 필요)

EPR

EPR 비용은 설계 수준 및 환경 성과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공인 대리인 및 생산자 책임 조직 등록 필수

제44-47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주요 내용

- 생산자(제조사, 수입사, 브랜드 소유자 등)가 패키징의 전 생애주기(설계~폐기·재활용) 관리 비용 부담
- 재활용성 성능 등급별 수수료 차등 적용 → 수수료 기준은 위임법(Delegated Act)으로 구체화될 예정
- 연간 10톤 이하 포장 공급 기업은 보고 간소화 대상: 부속서 IX의 B부 2항에 명시된 정보를 매년 6월 1일까지 제출

1	생산자 등록	● 모든 패키징 생산자는 회원국의 국가 등록부에 등록 의무 → 등록번호 발급 ● (현지 법인이 없는 경우) 공인 대리인 등록 의무
2	EPR 의무 이행	● 생산자 책임 조직 중심으로 포장폐기물 수거, 재활용, 비용 납부, 실적 보고 ● 생산자 책임 조직별로 유통·회수·재활용 실적을 자체 웹사이트에 공시 의무
3	EPR 비용 납부	● 패키징의 수거, 분류, 재활용, 폐기 등 전 과정의 실질적 비용 부담 ● 패키징의 재활용 용이성, 재사용성, PCR 함량 등 환경 성과에 따라 차등 적용(제7조)
4	실적 보고 및 감독·검증	● 매년(특정 경우 분기별) 전년도 실적 데이터를 국가등록부에 보고 ● 10톤 미만 소량 생산자는 간소화된 보고 양식 적용 가능

공인 대리인 등록·보고 미이행 시 EU 시장 진입 불가

공인 대리인/생산자 책임 조직 비교

구분	공인 대리인(Authorised Representative)	생산자 책임 조직(PRO)
역할	행정적 대리(등록, 보고 등)	EPR 실질 이행(재활용, 비용 등)
대상	개별 생산자 (특히, 해외/온라인)	다수 생산자(회원제)
방식	생산자가 서면 위임으로 지정	생산자들이 공동 설립, 국가 인가 필요
이행 범위	개별 생산자별 행정 의무 대행	회원 전체의 EPR 의무 집합적 이행
EPR 이행	직접 수행하지 않음	직접 수행 (수거, 재활용, 비용 집행 등)
법적 책임	위임 받은 생산자별로 분리	조직 전체가 생산자 의무 대표

보고 데이터 목록

등록 시, 제출 정보(Annex IX Part A)

- 패키징 및 브랜드 명, 주소, 연락처 등
- 공인 대리인 승인 시, 공인 대리인 정보 등
- 국가 식별 코드, 무역 등록 번호 등
- 책임 이행 선언문 및 인증서 등

보고 시, 제출 정보(Annex IX Part B)

- 국가 식별 코드, 보고기간, 생산자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 44조 7항 기준, 포장 범주의 중량별 수량 (부속서 II 표1 참고)
- 44조 8항 기준포장 유형에 대한 정보 (부속서 IX 표1 작성)
- 44조 10항 기준, 범주별, 중량별 등 수량 (부속서 II 표2 참고, 부속서 XII 표 3,5 작성)

1) 생산자 책임 조직(PRO, Producer Responsibility Organisation)



화장품 산업 대응을 위한 Case Study

PPWR 규제를 대응하여 이미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화장품 기업들의 활동을 참고하여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국내 기업들도 함께 부정적 환경 영향을 감축 시킬 수 있는 패키징 디자인, (재생)원료 사용 그리고 재사용 및 재활용을 하여 폐기물 감축을 위한 목표 수립 및 활동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런 중·장기적인 목표 수립 및 연구와 투자를 기반으로 화장품 산업에서도 규제 대응을 효과적으로 하길 기대한다.



화장품 산업에서의 대응 사례

조항	조항명	의무주체	화장품 산업 대응 필요 조항	대응 사례(또는 특이사항)	
				기업명	내용
1-4	기본 원칙	전체	X		
5	패키징에 대한 물질 요구 사항(유해물질)	기업	○	L'Oréal	2024년까지 PFAS 100% 폐지
6	재활용 가능한 패키징(재활용성)	기업	○	L'OCCITANE	FY2026까지 재활용 가능 패키징 100% 목표
7	플라스틱 패키징의 재활용 최소 함량	기업	○	Beiersdorf	2025년까지 재생원료 30% 사용 목표
8	플라스틱 패키징의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 원료	기업	○	LUMENE	2025년까지 재활용 플라스틱 및 재생원료(바이오 기반 플라스틱 포함) 비율 80% 목표
9	생분해성 패키징	기업	○	Unilever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를 재사용, 재활용, 퇴비화(생분해) 가능하도록 전환
10	포장 최소화	기업	○	LUMENE	2025년까지 포장재의 플라스틱 사용량 20% 감축 목표
11	재사용 가능 패키징	기업	○	Henkel	2025년까지 재활용 또는 재사용 가능한 패키징 100% 적용 목표
12	패키징 라벨링	기업	○	L'Oréal	QR 코드로 제품 라벨링 적용
13	포장 폐기물 수거할 라벨링	국가	X		
14	환경성 주장	기업	△(필요시)		
15-23	일반 의무(제조사, 공급사, 수입사, 유통사, 풀필먼트 서비스 제공자)	기업	○	※ 대응 사례 제외 : 제5~12조 준수한 경우 충족	
24	과대포장 관련 의무	기업	○	※ 대응 사례 제외 : 화장품 산업의 경우, 2030년 적용 예정으로 현재까지 명시적인 선언을 한 사례가 확인되지 않음	
25	특정 패키징 형식 제한	기업	○		
26	재사용 가능 패키징에 관한 의무	국가	X		
27	재사용 시스템에 관한 의무	기업	○	※ 대응 사례 제외 : 제26조에 따라 국가별 시스템이 확보되면 해당 국가 시장 진출 시 확보된 시스템에 참여 필요	
28	리필에 관한 의무	기업	○	Henkel	Authentic Beauty concept, Refill Bar 규칙 공개
29-30	재사용 목표 및 달성도 계산	기업	○	※ 대응 사례 제외 : 화장품 산업의 경우, 2030년 적용 예정으로 현재까지 명시적인 선언을 한 사례가 확인되지 않음	
31	재사용 목표에 대한 관할당국 보고	기업	○		
32-33	테이크어웨이 부문 리필 및 재사용 제공 의무	기업	X		
34	플라스틱 운송 봉투	국가	X		
35-39	패키징 적합성	기업	○	※ 대응 사례 제외 : 제5~12조 준수한 경우 충족	
40-42	관할당국 관련 의무사항	국가	X		
43	감축 목표	국가	△(데이터 제공 필요)		
44-47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기업	○	Unilever	EPR을 중요 리스크로 식별
48-50	보증금반환제도	기업	X		
51	재사용 및 리필	국가	X		
52	재활용 목표	국가			
53-54	재활용 목표 달성도 계산 규칙	국가	△(데이터 제공 필요)		
55-57	데이터 보고	국가			
58-62	세이프가드 절차	기업			
63	녹색 공공조달	전체	△(필요시)		
64-65	위임 권한 및 위원회 절차	국가	X		
66-67	개정 사항	전체	X		
68-71	최종 조정	국가	△(필요시)		

화장품 산업 대응 필요 조항이며 대응 사례를 제시한 경우

화장품 산업 대응 필요 조항이나, 대응 사례가 없거나 기타 조항을 준수한 경우 충족 또는 연계되어 있어 대응 사례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화장품 산업 대응 필수 조항이 아닌 경우

화장품 산업 대표 대응 사례

제5조

패키징에 대한 물질 요구 사항(유해물질)

Requirements for substances in packaging

L'ORÉAL

주요 내용

- 포장 또는 포장 구성품에 존재하는 물질로 인한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 크롬의 농도 합계는 100mg/kg으로 제한
- 2026년 8월 12일부터 식품 접촉 패키징에 PFAS(과불화화합물)가 한계값 이상 함유된 경우 해당 패키징은 시장 출시 불가
- L'Oréal은 2024년까지 PFAS를 제품에서 100% 폐지¹⁾
 - ✓ 화장품에서 PFAS는 강렬한 색을 내는 안료 코팅, 메이크업 지속 효과를 높이는 필름 형성, 방수 효과를 위해 사용되었으나 자연적으로 분해되지 않고, 잔류성이 높은 문제로 인해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
 - ✓ 2018년부터 모든 PFAS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관련 포트폴리오의 99% 이상 PFAS 없이 제조
 - ✓ 대표 종류인 PFOA, PFOS, PTFE 중 PFOA나 PFOS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며, 제품에서 PTFE를 완전히 제거

PPWR 이외 PFAS 규제

- 프랑스, 화장품에 PFAS 사용 금지²⁾
 - ✓ 프랑스는 2025년 3월, EU 영토에 대해 지금까지 가장 엄격한 제한을 도입한 [Loi n. 2025-188](#)을 제정
 - ✓ 2026년부터 **화장품**, 스키 왁스, 섬유 등 의도적으로 PFAS를 첨가한 특정 소비자 제품의 생산, 수입, 판매를 금지
- REACH, 화장품 내 사용 규제³⁾
 - ✓ 2026년 10월 10일부터 화장품은 PFAS의 한 종류인 PFHxA(퍼플루오로헥사노산) 및 그 염을 10억 분의 25(ppb) 이상, PFHxA 관련 물질의 경우 1,000ppb 이상의 농도로 함유 불가

PPWR 이외 중금속 규제

- 화장품 규정(EC) No 1223/2009에 따라 특정 중금속의 의도적 사용을 완전히 금지⁴⁾
 - ✓ 부속서 II 화장품에 금지된 물질 목록에서 납, 카드뮴, 수은, 크롬 사용을 금지
 - ✓ 이에 따라 현재 유럽 내 화장품에서는 해당 중금속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음

1) L'Oréal, "PFAS in cosmetics: 100% of L'Oréal formulas without PFAS by the end of 2024"

2) COSlaw.eu, "France bans PFAS in cosmetics", 2025

3) (EU) 2024/2462, COMMISSION REGULATION (EU) 2024/2462 of 19 September 2024, 2024

4) REGULATION (EC) No 1223/200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November 2009 on cosmetic products, 2025

화장품 산업 대표 대응 사례

제6조

재활용 가능한 패키징(재활용성)

Recyclable packaging

L'OCCITANE
EN PROVENCE

제9,11조 달성 연계

주요 내용

- 2028년 세부 재활용률 기준 및 평가 방법 제정 예정, 2030년부터 적용(재활용성 성과 등급별 시장 진입 제한)
 - 2030년 : A~C등급 적용
 - C등급 미만(재활용성 70% 미만) 시장 출시 불가
- 재활용성: ① 설계 적합성, ② 수거 가능성, ③ 선별 가능성, ④ 대규모 재활용 가능성(recycled at scale) 최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패키징
- L'OCCITANE en Provence는 재활용 가능한 패키징을 위해 목표를 공개하고, 재활용 가능 패키징을 적용¹⁾
 - ✓ 비워진 패키징이 재활용 또는 재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 FY2026 100% 달성 목표
 - ✓ 버진 플라스틱 사용량 FY2018년을 기준으로 FY 31년까지 -15% 달성 목표
- 재사용, 재활용 또는 생분해 가능 플라스틱 패키징



FY2024(현재)

37%

FY2026(목표)

100%

기존 패키징

재발매 패키징

30ml Shea Butter Hand Cream 패키징 재발매

구분	기존 패키징 (2024년 이전 판매 버전)	재발매 패키징 (2024년 이후 판매 버전)
중량	3.71g	2.84g
소재	다중소재 (플라스틱+알루미늄)	단일소재 (PE)
구성	4중 (튜브, 헤드, 캡, 뚜껑) *튜브를 막는 호일 마개	2중 (튜브, 헤드)
재활용성	재활용 불가능 소재	재활용 가능

1) L'OCCITANE en Provence, "LOCCITANE Group ESG Report FY2024 EN", 2024

화장품 산업 대표 대응 사례

제7조

플라스틱 패키징의 재활용 최소 함량

Minimum recycled content in plastic packaging

Beiersdor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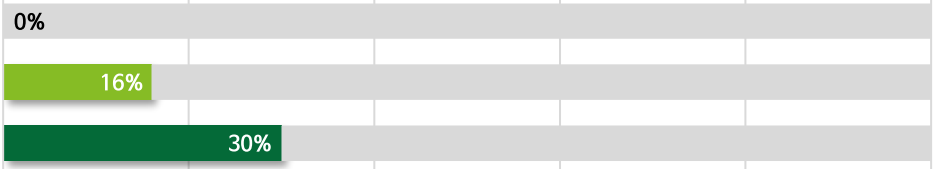
주요 내용

- 화장품의 경우 접촉 민감 패키징에 해당
- PET로 제작된 포장재의 경우 2030년까지 30%, 2050년까지 50% 달성 의무
- PET 이외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포장재의 경우 2030년까지 10%, 2050년까지 50% 달성 의무

- Beiersdorf는 사업 재생원료 함량 목표를 공개하고 대표 브랜드 NIVEA 제품 기반 적용¹⁾
 - ✓ 소비재 부문,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포장재에 **30% 재생원료 사용(PPWR 기준보다 이른 시기 충족 목표)**
 - ✓ NIVEA Shower Fresh Blends 같은 제품들도 최소 97% 재활용 플라스틱(PCR)으로 만든 PET 병에 담겨 출시되어, 150톤의 화석 연료 기반 신소재 플라스틱 사용 감축
 - ✓ 비플라스틱(제7조 미대상) 항목 예시로는 NIVEA 블루 크림 틴을 80% 재활용 알루미늄으로 전환
- Beiersdorf의 30% 재생원료 사용 목표 달성 현황



'19년(기준)
'24년(현재)
'25년(목표)



▲ NIVEA NATURALLY GOOD



▲ NIVEA 블루 크림 틴

1) Beiersdorf, "NONFIANCIAL STATEMENT 2024", 2024

화장품 산업 대표 대응 사례

제8조

플라스틱 패키징의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 원료

Biobased feedstock in plastic packaging

LUMENE

제6조 달성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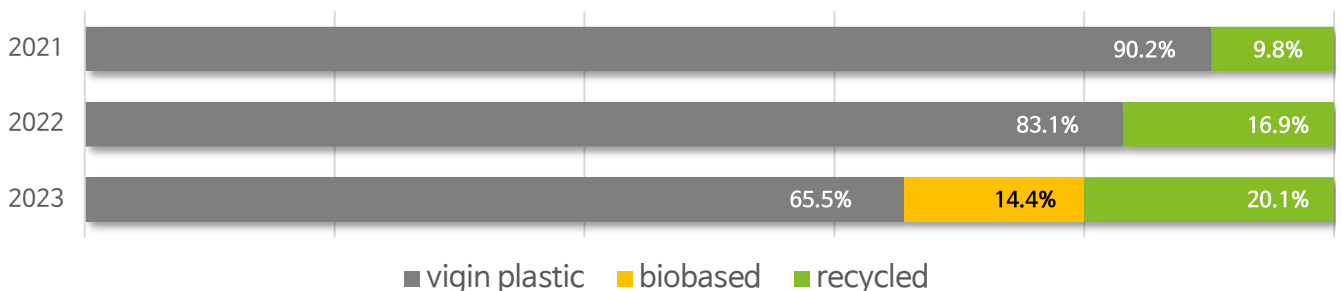
주요 내용

- 2028년 이후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 관련 구체적인 정의, 지속가능성 요구사항, 목표 등 내용을 포함한 입법안 제정 예정
- 원료 사용은 권장할 예정이지만, 패키징의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 함량 표시는 라벨링 의무 대상이 아님
- 현재 기업들의 대응은 규제보다 선행적인 차원에서 진행
- LUMENE은 2025년까지 재생플라스틱 또는 재생원료(바이오 기반, 생분해성) 사용 비율을 80% 달성 목표²⁾
 - ✓ 재생소재 사용으로 환경 영향 감소 및 비재생 화석 원료 사용 감소를 위해 목표 수립
 - ✓ 2023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기준 재활용 및 바이오 기반 합계 34% 달성(재활용 20%, 바이오 기반 14%)
 - ✓ 식량 경쟁이 없도록 식용 부산물 자원을 원료로 활용한 바이오 기반 소재를 사용하여 지속가능성과 친환경성을 확보하고, LCA로 영향평가 실시하여 제 3자 검증 완료
 - ✓ 목재 기반의 원료인 톨유(Tall oil)를 사용, 전체 원료의 97%가 매스 밸런스 방식을 통해 재생 가능 자원에 연결된 최초의 바이오 기반 용기를 출시



▲ Lumene Nordic-C Glow Moisturizer

● 재생플라스틱 및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 사용 비율 달성 성과



1) LUMENE, "LUMENE GROUP 2023 | SUSTAINABILITY REPORT", 2023

화장품 산업 대표 대응 사례

제9조

생분해성 패키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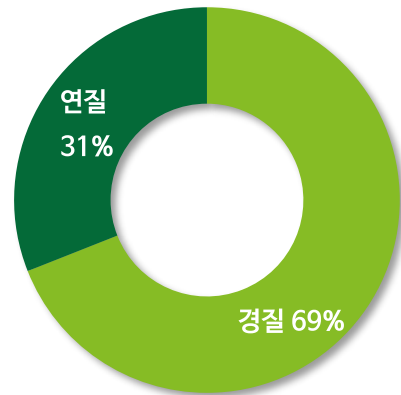
Compostable packaging

Unilever

제6, 11조 달성 연계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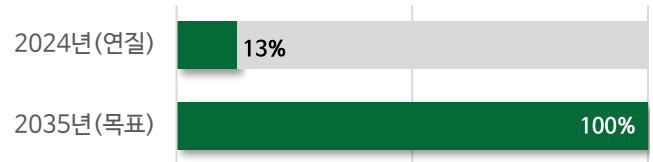
- 타 폐기물 흐름 재활용성 저해 금지 및 적합성 입증 필수
 - 2026년까지 산업용·가정용 생분해 기준 조화 표준 마련 예정
 - 원료 사용은 권장하나, 패키징의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 함량 표시는 라벨링 의무 대상이 아님
 - 현재 기업들의 대응은 규제보다 선행적인 차원에서 진행
- Unilever는 2030년(경질), 2035년(연질)까지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를 재사용, 재활용, 퇴비화(생분해) 가능하도록 전환
 - ✓ 유니레버의 플라스틱 포장재 목표는 26개 사업국 대상이며, 유니레버 전체 매출의 약 82%를 차지
 - ✓ 2024년 기준, 전체 포장재의 57%가 재사용, 재활용, 생분해 가능(경질 포장재 76%, 연질 포장재 13%)
 - 플라스틱 포장재 비율
 - ✓ 경질 포장재는 내용물이 없을 때도 단단한 플라스틱 포장재를 의미하며, 연질 포장재는 제품의 형태에 맞게 쉽게 성형, 접기, 변형이 가능한 플라스틱 포장재를 의미
 - ✓ 연질 플라스틱 포장재는 많은 시장에서 수거·처리·재활용 인프라가 아직 미흡하여 경질 플라스틱 포장재 대비 적용 속도가 지연



● 경질 2030년까지 100% 달성 목표



● 연질 2035년까지 100% 달성 목표

1) [Unilever,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24", 2025](#)

화장품 산업 대표 대응 사례

제10조

포장 최소화

Packaging minimisation

LUME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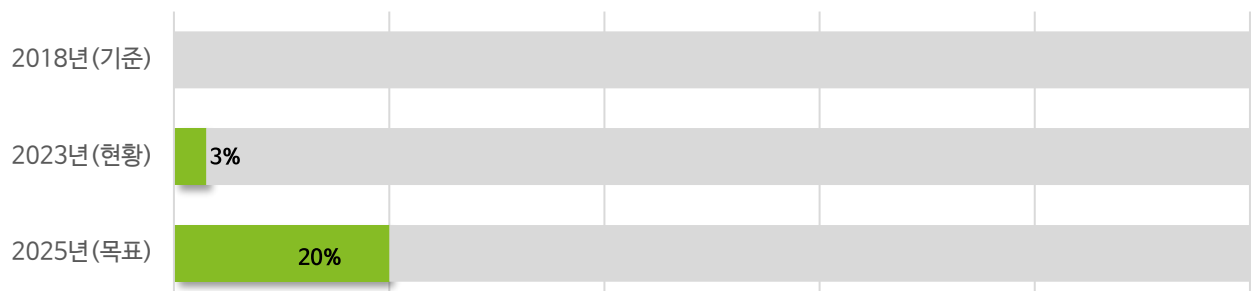
주요 내용

- 2030년부터 패키징의 무게, 부피, 충수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포장 성능 기준 미충족 혹은 과대포장 제품 판매 금지
- 예외: 2025년 2월 11일 이전에 등록된 디자인권/상표권 보호 포장 / EU 법에 따라 보호받는 지리적 표시(GI) 제품, 품질인증 제품
- 2027년 포장 최소화 요건의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표준 마련 예정, 기술문서 작성 의무
- 재사용 패키징은 제11조의 추가 요건을 함께 고려
- LUMENE은 2025년까지 포장재의 플라스틱 사용량 20% 감축 목표¹⁾
 - ✓ 포장재 감축은 환경 영향과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포장재 감축을 선정
 - ✓ 주로 사용하는 보습제 용기의 경량화에 중점, 2020년 용기 경량화로 연간 플라스틱 40톤 절감 경험 보유
 - ✓ 2023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기준 3% 감축 실현
 - ✓ 2024년 2세대 경량화 용기 개발하여 기존 포장재 사용량 대비 44% 감축 용기 출시²⁾



▲ Lumene 50 ml jars

- 포장재 사용량 감축 현황



1) LUMENE, "LUMENE GROUP 2023 | SUSTAINABILITY REPORT", 2023

2) LUMENE, "LUMENE INTRODUCES A NEW BIO-BASED MOISTURIZER JAR VISIBLY SMALLER IN SIZE", 2024

화장품 산업 대표 대응 사례

제11조

재사용 가능 패키징

Reusable packaging



제6조 달성 연계

주요 내용

- 재사용 패키징 인정받기 위해서는 내구성(Durability), 위생(Cleanability & Hygiene), 추적 가능성(Traceability) 등 요건 충족 필요
 - (내구성) 여러 번 재사용될 목적으로 고안 및 설계 되어 시장에 출시
 - (최소 순환 수 달성) 예측가능한 사용 조건에서 최대한 많은 회전을 달성하도록 고안 및 설계
 - (소비자 사항) 소비자 건강, 안전 및 위생 관련 요건 충족
 - (위생) 품질과 안전을 유지하면서 비우거나 내용물을 꺼내고, 다시 채울 수 있으며, 위생 요건 준수
 - (재정비 가능성) 부속서 VI B부에 따라 재정비가 가능하며, 본래의 기능을 계속 수행
 - (추적가능성) 안전, 올바른 사용, 추적성, 유통기한 등 제품 및 패키징의 특성과 관련된 정보를 라벨 등으로 부착
 - (작업 안전성) 비우거나 내용물을 꺼내고, 다시 채우는 과정에서 작업자의 건강과 안전 확보
 - (제6조 조건 충족) 폐기 시 재활용 가능 패키징에 관한 제6조의 요건을 충족
- 2027년 2월 12일까지 이 규정을 보완하여 재사용 가능한 패키징의 순환에 대한 최소 횟수 등 설정
- HENKEL은 2025년까지 재활용 또는 재사용 가능한 패키징 100% 적용 목표¹⁾
 - ✓ 두가지 에코디자인 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생산 시 배출량이 적은 원료 기반으로 생산하려는 형식디자인(Format design)과 순환성을 가능하게 하는 재사용 및 리필 가능한 포장 솔루션으로써 포장디자인(Packaging design) 개발 전략을 보유
 - ✓ 재사용 및 리필 가능한 포장 솔루션의 개발로 포장 재료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포장 재료와 관련 배출량 감축
 - ✓ 재활용 또는 재사용 가능한 패키징은 포장디자인에 해당되며, 2018 년 목표 발표 이후 2024년 기준 89% 달성

- 2025년까지 재활용 또는 재사용 가능한 패키징 100%



1) [Henkel, "SUSTAINABILITY REPORT", 2024](#)

화장품 산업 대표 대응 사례

제12조

패키징 라벨링

Labelling of packaging

L'ORÉAL

주요 내용

- 2028년부터 모든 패키징에 재질, 분리배출 방법 등을 포함한 조화된(Harmonised) 라벨 부착 의무화
- 부착이 어려운 소형 패키징, 그룹 포장에 일반 라벨 또는 디지털 라벨 부착 필요
- 2026년에 패키징 라벨링 상세 요건 및 디지털 표기 방법 관련 위임법(Delegated acts) 제정 예정
- L'Oréal, QR 코드로 제품 라벨링 적용^{1) 2)}
 - ✓ 2024년, 2년 내 모든 제품에 QR코드를 적용한다는 계획 발표(2024년 기준 41개 브랜드 15억 개 제품 적용)
 - ✓ QR 코드는 기존 바코드가 20자만 저장할 수 있는 반면, 4,000자 이상을 저장 가능
 - ✓ QR 코드에는 설명 비디오, 튜토리얼, 환경 영향에 대한 정보 포함하여 책임 있는 정보 제공
- PPWR 세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L'Oréal, QR 코드에 제품 전 주기 정보 등이 미비
 - ✓ 디지털 라벨에는 소비자 분리배출 안내, 오해·혼동 유발 라벨/마크/문구 금지, 재사용 인프라 관련 정보 등 조건들이 있으나 현행 QR코드에는 확인되지 않음

참고하기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 확대³⁾
 - ✓ 포장지의 변경과 폐기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자원을 절약하여 저탄소·친환경에 기여하고자 운영
 - ✓ 2024년 6개사(LG생활건강, 애경산업, 코스모코스, 동방코스메틱, 엘오케이, 록시땅코리아), 19개 품목에서 2025년 7개사(방기정(주), (주)바스케이션, 아모레퍼시픽, (유)오아이오, (주)트리셀, 피엘코스메틱, 휴젤) 추가, 총 76개 품목 대상으로 진행
- QR 코드 관련 사항⁴⁾
 - ✓ 「화장품법」제10조에 따른 모든 기재·표시 정보
 - ✓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모든 성분,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가격, 기능성화장품 표시(글자 또는 도안), 사용할 때 주의사항 등
 - ✓ [적용 제품 목록\(\(사\)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공지사항 바로가기\)](#)

1) L'Oréal, "L'Oréal revolutionizes product labeling with QR codes", 2024

2) L'Oréal, "L'Oréal wants to put a QR code on all its products", 2024

3) 약업신문, "식약처,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 확대 '참여업체, 품목 확대'", 2025

4) 식약처, "식약처,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 확대", 2025

화장품 산업 대표 대응 사례

제28조

리필에 관한 의무

Obligations related to refill



주요 내용

- 리필을 통해 제품 구매 가능성을 제공하는 경제 사업자는 최종 사용자에게 리필 규칙 공유 필수
 - 1. 리필을 통해 제공되는 제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용기 유형
 - 2. 리필에 대한 위생 기준
 - 3. 1번 규칙에서 언급된 용기의 사용과 관련된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최종 사용자의 책임
- 부적합 용기 제공 시 보증금 제도 도입을 요구하며, 비위생적 용기는 리필을 거부 가능
- 2030년부터 400m² 초과 대형 매장은 면적의 10%를 리필 스테이션에 할당하도록 유도해 리필 인프라 확대를 지원
- 리필 시스템을 통한 재사용성 증대¹⁾
 - ✓ 자체 세제 및 청소 제품 브랜드 Love Nature, 독일 내 50개 리필스테이션을 통해 리필 가능
 - ✓ 리필 중단 시, 용기는 100% 재활용 가능
 - ✓ 자체 뷰티 케어 브랜드 Authentic Beauty concept, 2세대 Refill Bar로서 미용실을 중심으로 리필 스테이션을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²⁾



▲ Love Nature 리필 스테이션



▲ Refill Bar model

- Authentic Beauty concept, 2세대 Refill Bar 규칙
 - ✓ 용기 유형 : Authentic Beauty Concept 제품을 90% 재활용 플라스틱(PCR)으로 제작된 250ml 용량의 소매용 병(최소 5회 재사용이 가능하여 플라스틱 사용량을 83% 감축)
 - ✓ 위생기준 : 충전 후 병에는 포레스트 필름(ISCC 인증을 받은 시중 최초의 목재 기반 필름 소재) 라벨이 부착되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
 - ✓ 사용 방식 : 전문가는 상담(건강 및 안전에 대한 사항 확인) 후 Authentic Beauty Concept 제품을 담은 용기에 정보가 담긴 포레스트 필름을 부착해 고객에게 전달
 - ✓ 특이사항 : 유통 매장이 아닌 미용실과 협업하여 운영한 사례로서 리필 인프라 확대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음

1) Henkel, "Recycle, refill, rethink - 7 solutions for more sustainable packaging", 2022

2) Henkel, "Authentic Beauty Concept launches a new generation of their Refill Bar", 2022

화장품 산업 대표 대응 사례

제44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Unilever

주요 내용

- 생산자(제조사, 수입사, 브랜드 소유자 등)가 패키징의 전 생애주기(설계~폐기·재활용) 관리 비용 부담
- 재활용성 성능 등급별 수수료 차등 적용 → 수수료 기준은 위임법(Delegated Act)으로 구체화될 예정
- 연간 10톤 이하 포장 공급 기업은 보고 간소화 대상: 부속서 IX의 B부 2항에 명시된 정보를 매년 6월 1일까지 제출

● Unilever는 확장된 생산자 책임 이슈를 중요한 리스크로 식별¹⁾

- ✓ 미준수 시, 폐기물 관리와 포장 redesign(재설계)과 관련된 비용이 증가와 일부 유형의 플라스틱 포장재 및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해 금지 또는 세금이 부과될 위험이 있어, 시장 접근성이 감소를 예상
- ✓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 플라스틱으로의 전환, 경량화된 패키징 디자인, 대체 패키징 · 형태 · 모델 개발을 통해 버진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을 목표
- ✓ 글로벌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기업 연합(Business Coalition for a Global Plastics Treaty) 공동의장사로서, 기업들이 자사의 포장재 선택에 책임을 지도록 EPR 제도의 도입을 촉구
- ✓ 2020년에는 컨슈머 굿즈 포럼의 EPR 제도 설계안에 동의했으며, 2021년에는 업계 동료들과 함께 EPR 도입을 지지하는 엘런 맥아더 재단의 공개 성명에서 서명

With this statement, we publicly express our support for the implementation of EPR schemes for packaging and commit to:

1

Ensure our entire organisation is aligned on, and our actions are in line with, this statement

2

Be constructive in our engagement with governments and other stakeholders: advocating for the establishment of well-designed EPR policies and being supportive in working out how to implement and continuously improve EPR schemes in the local context

3

Engage with our peers and the relevant associations and collaborations we are part of to work towards aligning their positions and actions accordingly

No

이행 촉구 성명서 중 일부

1

우리 조직 전체가 이 성명에 부합하도록 일치된 방향성을 가지고 행동할 것을 보장합니다.

2

정부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에 있어 건설적인 자세로 임하며, 잘 설계된 EPR 정책의 도입을 촉구하고, 각 지역 맥락에 맞는 EPR 제도 도입 및 지속적 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3

동종 업계 및 관련 협회, 우리가 속한 협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그들의 입장과 행동 역시 이에 맞게 조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PR 이행 촉구 성명서, 엘런 맥아더 재단²⁾

● 성명 기업²⁾

- ✓ Unilever, Beiersdorf AG, Henkel AG & Co. KGaA, L'Occitane-En-Provence, L'OREAL, 등 63개 참여
- ✓ 이외 공장, 제조업체, 재활용기업 및 기타 기업 63개, 투자사 11개, 전문 컨설팅 기관 22개, 학계 및 NGO 31개 기관 성명 참여

1) [Unilever,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24", 2025](#)

2) [ELLEN MACARTHER FOUNDATION,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2022](#)

IV

EU 회원국별 패키징 관련 규제 비교 분석

EU 회원국들의 정책을 토대로 PPWR 위임법의 방향성을 추론한 결과, PPWR 공급망 전체의 '책임 정보 연동 구조'를 실현하기 위해 EU 전반의 규제 생태계와 연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 비교 대상 국가 설정

PPWR의 기본 요건으로는 유해화학물질, 재활용성, PCR, 재사용, 라벨링 등 기술 문서 뿐 아니라 DoC에서 포함되는 내용으로, 주요 EU 회원국의 정책과 어떻게 연계되어 이행되는지, 그리고 국내 기업들이 각 수출 대상국에서 EU 및 개별 회원국의 규제 의무를 어떻게 준수해야 하는지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규제 강도와 우리나라의 국가별 화장품 수출 실적을 기준으로 상위 3개국을 선정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가 수출 비중이 높고, 동시에 환경 및 포장 관련 규제가 상대적으로 강한 국가로 도출되어, 본 파트에서는 이들 세 국가를 중심으로 정책 비교·분석을 수행한다.

비교 대상 국가 선정 기준

규제 강도



수출 실적

2024년 국내 화장품 국가별 누적 수출 실적 순위¹⁾ (EU 회원국 중심)

순위 국가명 수출금액(천 달러)

14 폴란드 56,840

18 네덜란드 41,471

24 독일 33,239

25 프랑스 33,216

순위 국가명 수출금액(천 달러)

30 스페인 17,382

36 이탈리아 11,787

38 덴마크 10,945

39 스웨덴 10,816

1) [대한화장품협회, 2024년 화장품 수출입 실적](#)

2. 주요 회원국 패키징 법안 비교 분석

① 패키징에 대한 물질 요구 사항(유해물질)

기본적으로 ‘유해물질’의 정의 및 범주는 EU 회원국별로 차이가 있다. 프랑스는 SVHC¹⁾ 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독성·환경 위해 물질까지 명시적으로 유해물질에 포함하고 있어 법적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 반면, 독일과 네덜란드는 REACH·CLP 등 상위 규정을 묵시적으로 참조하기 때문에, SVHC 후보물질이나 동등한 우려 물질이 자동으로 규제된다고 보긴 어렵다. PPWR에서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REACH는 제품 패키징에 대해서도 SVHC가 0.1% 이상 포함된 경우 고객·유통사·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와 EU SCIP 데이터베이스에 관련 물질 정보를 등록할 의무가 발생(REACH 제33조)하므로 실무적으로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

PPWR 등 패키징 규정에서 유해물질 관련 명시적인 법적 요구사항은 ‘중금속 4종(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롬) 총합 100ppm 이하’ 규정 뿐이며, 조사대상국들은 농도 관련 단위 표기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기준을 자국 법 조항에 반영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대한 **예외/면제** 대상은 PPWR의 하위 법령인 행정 결정(Commission Decision)에 따라 ①유리 패키징, ②B2B용 플라스틱 상자 팔레트로 지정되었으며, 이는 조사 대상국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유리 소재의 경우 재활용 되는 과정에서 중금속이 비의도적으로 잔류할 수 있지만 구조적으로 이행(migration)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B2B용 플라스틱 상자·팔레트는 다회용 산업용 운송 포장이기 때문에 유해물질 규정 면제 대상이 된다.

증빙문서 보관과 관련하여, PPWR은 적합성 선언서와 기술문서를 보관하고 있다가 시장 감독기관이 요구할 경우 10일 이내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조사 대상국들의 현행법들은 PPWR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네덜란드는 문서 작성 및 보관 의무를 가지고 있으나 시장 감독기관 요구 시 제출 기한은 명시하지 않고 있고, 프랑스는 PPWR에서 요구하는 문서 외에 추가적으로 보관 및 제출이 필요한 문서 목록을 제시하는 대신 PPWR 보다 완화된 15일의 문서 제출 기한을 제시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화장품법과의 중복 규제를 피하기 위해 명시적으로 규제 내용을 작성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1) SVHC: REACH 규정 제 57조, 59조에서 정의된 ‘고위험 우려물질(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② 재활용 가능한 패키징(재활용성)

EU에서는 재활용성과 관련한 목표설정 및 등급 인증을 위해, 특히 플라스틱 산업에서는 Recyclclass의 재활용성 평가 체계를 활용하고 있다. 이에 PPWR의 규제 도입과 맞춰서 재활용성 등급을 일치시키는 등 EU 내에서 가장 널리 활용될 뿐 아니라, 기술적 완성도, 산업 수용성, 정책 연계성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어 주요 국가와 Recyclclass의 기준을 비교 분석하였다.

포장재 재활용성과 관련하여 설계 기준을 법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독일이 유일하다. 독일은 포장재법(VerpackG) 제21조에 따라 재활용 가능성 평가 기준인 ZSVR 최소기준(Mindeststandard)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며, 이 기준은 포장재가 독일 시장에 유통되기 위한 사전 요건으로 작용한다. 해당 기준은 재질의 기술적 재활용 가능성과 더불어 전체 산업 재활용 공정의 80% 이상에서 실제 수용 가능해야 함을 요구하는 등 정성 중심의 평가 체계를 적용한다. 프랑스는 공공 PRO인 CITEO가 운영하는 CITEO TREE 등급 체계를 통해 포장재 재활용성을 5단계로 평가하며, Orange(조건부 불가) 또는 Red(완전 불가) 등급은 실질적인 규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RecyClass는 법적 의무는 없지만, 회수 재질 비율 $\geq 90\%$ 일 경우 A등급을 부여하는 기술 기반 민간 인증 체계로, EU의 PPWR 구조와 유사성을 지닌다. 네덜란드는 KIDV 가이드라인을 통해 주재질이 전체 중량의 70% 이상인지와 재활용 공정에서 수용 가능한지 여부를 중심으로 정성·정량 혼합 평가를 시행하지만, 공식 등급 체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재활용률에 대한 산정식은 가이드라인마다 차이가 있는데, 산정식의 분자를 중심으로 기준의 엄격성을 비교한다면 EU RecyClass는 실제 기계적 재활용 공정에서 최종 회수된 양만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프랑스는 수거·선별·재활용 인프라가 산업적으로 구축되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공정 수용률이 80% 미만인 경우는 Orange~Red 등급으로 구분해 중간 수준의 현실 기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실제 네덜란드 재활용 시스템에서 수용 가능 여부를 보기 때문에 가장 실무적으로 유연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독일은 정성적으로 분리 수거 대상 여부, 선별 가능 여부, 기계적 재활용 호환 여부를 판단하므로 기준 자체는 엄격하지만 정량적인 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향후 PPWR 기준에 맞춰 변경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사 대상국들은 공통적으로 기관, 시험 대상 및 절차, 제출 문서 등을 포함한 시험 방법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으나 특별히 RecyClass는 공식 실증 프로토콜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어 규제 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재활용 등급 체계

	EU	기타	회원국		
구분	 유럽	RecyClass Recyclclass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내용	A: $\geq 95\%$ B: $\geq 80\%$ C: $\geq 70\%$ 재활용 불가: <70%	- A: >95% - B: >80% - C: >70% - 재활용 불가: <70%	- A: $\geq 95\%$ - B: $\geq 80\%$ - C: $\geq 50\%$ - D: 0% (Green or Orange Category) - E: 0% (Red Category)	- 높은 수준 재활용성 - 중간 수준 재활용성 - 낮은 수준 재활용성 - 재활용 불가	- 우수 - 양호 - 제한적 - 재활용 불가

EU 내 재활용 시설에서의 실제 재활용 실적을 평가하는 기준인 ‘대규모 재활용 평가’의 경우, 실제 재활용으로 인정되는 기준이 아직 통일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 외 타 국가의 재활용 실적을 인정하지 않고, 재활용 원료에 대한 품질 및 시장성까지 검토하고 있어 규제 기준이 가장 엄격하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평가 받는 재질의 80% 이상이 독일 내 전체 재활용 공정에 실제로 투입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산업적 통용성과 보편성을 중요시하므로 특수 소재, 신소재, 다층 복합재는 재활용성을 인정받기 매우 어려운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네덜란드와 RecyClass의 경우 2개 이상 재활용 시설에서의 처리 실적이 있는지를 확인하므로 상대적으로 유연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혁신 패키징의 경우 PPWR에서는 한시적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프랑스나 독일에서는 관련 기준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며 RecyClass와 네덜란드에서는 재활용 등급 평가 시 별도의 입증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재활용성 관련 증빙문서 보관은 RecyClass와 조사 대상국들의 공통 요구사항이지만, 독일의 경우 특별히 패키징의 재질·질량·회수방법 정보를 외부 검증 받아 ‘완전성 선언서(Vollständigkeitserklärung)’¹⁾의 형태로 매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PR과 관련하여 RecyClass 및 조사 대상국들은 공통적으로 재활용성 성능 등급에 따른 기여금 차등화 적용을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요율 및 할인 금액 등은 확인이 필요하다.

대규모 재활용 평가

	EU	기타	회원국		
구분	 유럽	RecyClass Recyclclass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내용	[Article 6(2)] 2035년 도입 예정 [Article 6(5)] 2030년까지 평가 방법론 채택 예정	유럽 내 다수(2개 이상) 리사이클러(패키징 재활용하는 주체)에서 연중처리 실적 입증	[L541-9] 프랑스 내 수거·분리·재활용 체계 산업적 구축 여부(재활용 물질의 품질과 시장성 포함)	[Mindeststandard] 80% 이상 실제 산업 인프라 필요: 20% 미만은 개별 입증 별도 보고	[KIDV 가이드라인] 수거 패키징 50% 이상, 2개 이상 리사이클러(패키징 재활용하는 주체)가 실제 선별·재생 가공 여부 실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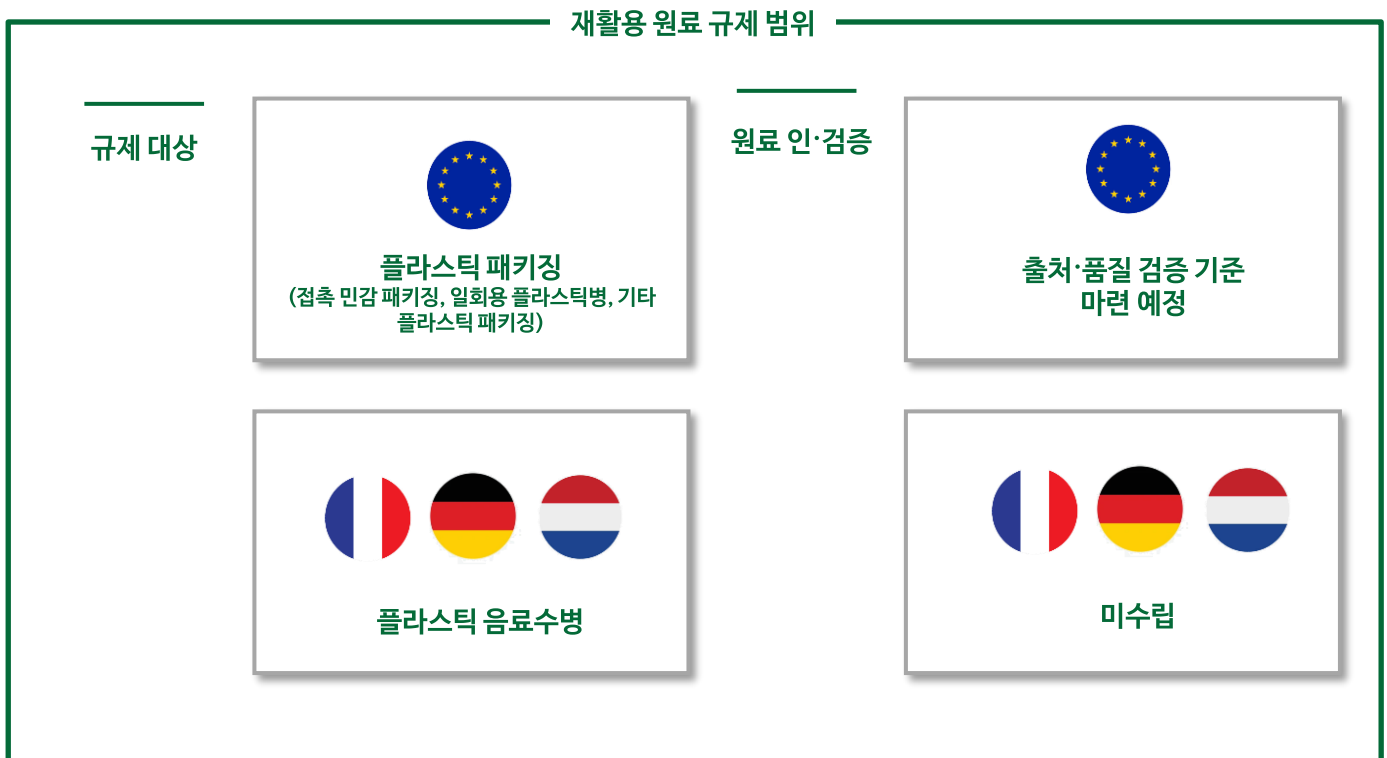
1) 면제 대상: 연간 유리 80,000kg 미만, 종이 50,000kg 미만, 기타 재료 유형 30,000kg 미만을 독일 시장에 출시한 사업자

③ 플라스틱 패키징의 재활용 최소 함량

PPWR은 기본적으로 모든 패키징을 규제 대상으로 하지만, 현재까지 공개된 초안에서 재생원료와 관련한 규제는 ‘플라스틱’에 맞춰져 있다. PCR 함량 의무를 적용함에 있어 ‘접촉 민감 패키징’, ‘일회용 플라스틱병’, ‘기타 플라스틱 패키징 유형’에 대해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특별히 화장품에 포함된 접촉 민감 패키징의 PCR 함량과 관련해서는 타 유형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¹⁾ 그러나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는 플라스틱 음료병에 한해서만 PCR 의무 함량 목표를 적용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PPWR 대비 규제 범위가 한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PPWR에서 PCR 의무 함량 목표를 설정하였기 때문에 모든 EU 회원국들은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해 이를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혹은 그 이상으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이므로 컴플라이언스 대응 차원에서 수출국의 법령 개정 또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또한 PPWR에 따르면 향후 집행법을 통해 재활용 원료의 출처 및 품질 관련 인·검증 기준을 결정할 예정이나 아직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의 패키징 법안에서는 이와 관련된 조항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수출국별로 증빙문서와 함께 데이터 제출 관련 규제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예외/면제 대상은 주로 의료, 의약, 멸균 포장용 패키징 그리고 플라스틱 뚜껑 또는 전체에서 적은 중량을 차지하는 부속으로 조사 대상국들의 경우 음료병에 대해서는 동일한 조항을 두고 있으며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해 규제 범위를 현재의 음료병에서 플라스틱 패키징 전반으로 확대할 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 PET 기반 접촉 민감 패키징: 30% (2030년), 50% (2040년)

PET 외 접촉 민감 패키징: 10% (2030년), 25% (2040년)

일회용 플라스틱병: 30% (2030년), 65% (2040년)

기타 플라스틱 패키징: 35% (2030년), 65% (2040년)

④ 포장 최소화

PPWR의 경우 불필요한 포장 최소화 및 과대포장 관련하여 기본 원칙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EU 조화 표준을 통해 빈 공간 계산/측정 방법과 포장 유형별 허용치를 정할 예정이다. 또한 포장 면적, 부피, 구조와 관련한 기술문서 구비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특별히 예외/면제 대상에 상표 디자인 등록건을 포함시키고 있다.

조사 대상국들 중 독일과 네덜란드는 기본적으로 패키징 법안에서 포장 최소화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규제 내용은 수립하지 않은 상태이며, 프랑스의 경우 패키징 법안에 포장 최소화 및 과대포장 개념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결론적으로, 포장 최소화와 과대포장은 PPWR 기본 의무사항들 중 PPWR-EU 회원국 간 격차가 가장 큰 규제 분야이며 이러한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EU 회원국들의 후속 입법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포장 최소화

	EU	회원국		
국가	 유럽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기본원칙	○	-	○	○
빈공간 계산/측정	○	-	-	-
유형별 허용치	○	-	-	-
증빙문서	○	-	-	○
예외/면제	○	-	-	-

1) REACH 규정 제 57조에서 정의된 ‘고위험 우려물질(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⑤ 패키징 라벨링

표시 라벨의 유형과 관련하여, PPWR에서는 조화된 라벨과 디지털 라벨을 도입 예정이나 조사 대상국들 중에 디지털 라벨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 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프랑스는 패키징 법안에서 자국 고유 라벨인 Triman 로고와 Info-Tri(분리배출 방법)를 사용하되 EU 또는 타 EU 국가의 공식 의무라벨의 상호 인정을 명시하고 있으나 독일과 네덜란드는 기본적으로 법 체계의 패키징 법안이 아닌 화장품법의 라벨 규정을 묵시적으로 참조하고 있다.

프랑스는 패키징 법안들에 라벨과 함께 사용되어야 할 문구부터 디지털 표시 관련 요구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생원료와 유해물질 및 고위험 우려물질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라벨에 문구로 표기해야 한다는 점에서 PPWR보다 규제 수준이 강력하다고 할 수 있다. 디지털 표시와 관련해서는 PPWR과 거의 동일한 항목의 정보들을 제공해야 하는데, 차이가 있다면 PPWR은 배출/수거 지점 같은 EPR 재활용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데 프랑스는 EPR 보상금/벌점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프랑스는 유해물질 관련 정보를 어플이나 웹사이트에 유해물질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어서 수출 시 주의가 필요하다.

라벨링 의무사항

	EU	회원국		
국가	 유럽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조화된 라벨	○	○ (EU 상호인정)	-	-
디지털 라벨	○	○ (유해물질 + EPR 분담금 정보)	-	-
기타 라벨	-	-	○ (화장품법 라벨)	○ (화장품법 라벨)

⑥ 보고 및 처벌 규정

PPWR은 패키징의 감축, 재사용, 재활용 관련 실적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고 제5~12조의 기본 의무 사항 및 EPR 관련 의무 사항을 시정 조치 요구 후에도 미이행할 경우 행정 벌금을 부과하거나 출시를 제한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조사대상국들도 기본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패키징의 재활용 실적 데이터와 증빙자료를 매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의무 미행에 따른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제출해야 하는 정보 내역은 국가별로 상이하나 프랑스는 PCR 함량 비율 및 폐기물 관리 흐름을, 독일은 패키징의 재질·질량·회수방법 관련 정보를, 네덜란드는 포장재 유통량, 단위, 수거·재활용 실적을 요구하고 있다. 프랑스와 네덜란드는 증빙 자료 제출만을 요구하고 있지만, 독일은 제3자 기관을 통한 공인 인증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므로 수출 시 관련 절차 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국가마다 직접 제출 혹은 EPR 공인 대리인/PRO를 통한 제출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준비도 필요하다.

데이터 제출 대상과 관련하여, 독일과 네덜란드는 연간 시장 출시량을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자에 대해 데이터 제출 의무를 면제하고 있지만, 프랑스만 데이터 제출 의무를 일괄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PPWR에서는 소규모 생산자에게 간소화된 정보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PPWR 보다 엄격한 규제 수준을 유지할지 아니면 이런 간소화 규제 조치를 도입할지에 대해서는 향후 입법 동향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행정벌금 기준으로는 독일이 가장 높은 금액을 부과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위반 사항이 세분화되어 있어 수출 준비 시 각 항목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

데이터 보고

	EU	회원국		
국가	 유럽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데이터 보고	○	○	○	○
데이터 보고 면제 대상	○ (10톤 미만 소규모 생산자 면제)	-	○ 포장재질별 면제 수준 공개	○ (50톤 미만 생산자)



국내 법률과의 비교 분석을 통한 실무진들의 Check Point!

PPWR의 본격적 도입 및 시행으로 인한 시장 내 변화를 전망하고,
화장품 산업 밸류체인의 구성원들이 PPWR 대응을 위해서 갖춰야 할 대응 역량과
그에 대한 주요 정보를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실무진들의 Check Point

포장재 규제 대응에서 실무 담당자가 가장 먼저 숙지해야 할 것은 적합성 평가 절차와 적합성 선언의 중요 조항들이다. 특히 중요 조항에 대해서는 기존의 국내 법률을 기반으로 비교하여 국내에서 이행되는 절차와 상이한 점을 강조하고 실무진들이 유의할 점을 정리하였다. 더 나아가, 적합성 선언과 기술문서 등 실무자들이 작성해야 하는 문서에 대한 세부 구성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1. 적합성 평가 절차

1. 내부생산관리



2. 기술문서



3. 제조



4. 적합성 선언

적합성 평가는 내부 생산 관리, 기술문서, 제조, 적합성 선언 단계로 진행된다. 내부 생산 관리 단계에서는 제조업체가 단독 책임 하에 제2, 3, 4조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고, 해당 포장에 제5~12조 규정을 충족했는지 확인한다. 이어 기술문서 단계에서는 포장재가 규정을 충족했는지 평가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부적합 위험에 대한 적절한 분석 및 평가를 포함해야 한다. 제조 단계에서는 규정을 충족하는 조치 하에서 제조될 수 있도록 공정을 운영 및 모니터링 한다. 적합성 선언 단계에서는 각 포장 유형에 대한 서면 적합성 선언서를 작성하여 기술문서와 함께 당국이 확인 할 수 있도록 보관한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적합성 평가를 제조업체의 책임 하에서 공인 대리인이 이행할 수 있다.

2. 중요 조항



※ 제8조(플라스틱 패키징의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 원료), 제9조(생분해성 패키징), 제11조(재사용 가능 패키징)에 대한 PPWR의 자세한 내용은 추후 입법 또는 세부 기준 발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제8,9,11조 항목의 체크리스트는 현 시점에서는 제외하여 구성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중요 조항

제5조 패키징에 대한 물질 요구 사항(유해물질)

주요 내용

- 우려물질의 존재 및 농도가 최소화, 폐기물 관리와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부정적 영향 최소화
- 2026년 12월 31일까지 패키징의 재사용/재활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사용 제한을 채택하고 DfR (Design for Recycling) 규정(제6조 4항)에 반영할 예정
- 포장 또는 포장 구성품에 존재하는 물질로 인한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 크롬의 농도 합계는 100mg/kg 제한

$$\begin{array}{|c|} \hline \text{Pb} \\ \hline \text{납} \end{array} + \begin{array}{|c|} \hline \text{Cd} \\ \hline \text{카드뮴} \end{array} + \begin{array}{|c|} \hline \text{Hg} \\ \hline \text{수은} \end{array} + \begin{array}{|c|} \hline \text{Cr} \\ \hline \text{크롬}^{1)} \end{array} \leq 100 \text{mg/kg}^{2)}$$

국내 법률과의 비교

PPWR은 국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과 유사하며, 자원재활용법 제9조의 하위 법령인 「제품의 포장재질 ·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제품포장규칙) 제3조 [세부 고시 내용](#)에서도 납, 카드뮴, 수은, 6가 크롬 총합 100ppm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두 규제의 차이점은 PPWR의 경우, PFAS의 경우 식품 접촉 포장재에 대해서 규제가 있고, 국내 제품포장 규칙의 경우 PVC에 대한 특정 사용 금지 규제가 있다.

PPWR 제5조	구분	자원재활용법 제9조 - 제품포장규칙 제3조 세부 고시
시장에 출시되는 포장재 (PFAS 규제는 식품 접촉 포장재만 대상)	제한 대상	포장재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
유리포장, 플라스틱 상장/팔레트(B2B용)	면제 대상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포장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 크롬의 농도 합계는 100mg/kg 제한	공통 규제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 크롬의 농도 합계는 100mg/kg 제한
식품 접촉 포장재에 PFAS 한계값 이상 함유 금지	기타 규제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를 사용하여 첩합(래미네이션) · 수축포장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 사용 금지
적합성 선언서 및 기술문서 작성·보관	증빙문서	자율 평가 후 평가 내용 및 기준 공개 3년마다 재검토

1) 크롬 중 인체에 유해한 '6가 크롬'이 해당, 국내 기준과도 유사

2) 100mg/kg은 100ppm 과 동일한 의미이며, mg/kg은 제품 및 패키징의 용량관점에서 많이 사용되고, ppm은 주로 화학물질의 용량을 나타낼 때 많이 사용

2. 중요 조항

제6조 재활용 가능한 패키징(재활용성)

주요 내용

- 2028년 세부 재활용률 기준 및 평가 방법 제정 예정, 2030년부터 적용(재활용성 성능 등급별 시장 진입 제한)
- 재활용성: ① 설계 적합성, ② 수거 가능성, ③ 선별 가능성, ④ 대규모 재활용 (recycled at scale)가능성의 최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패키징

등급제 적용

2030년 : A~C등급 적용
- C등급 미만 시장 출시 불가

2038년 : A·B등급만 사용 가능
- C등급 이하 시장 출시 불가



국내 법률과의 비교

PPWR 제6조의 경우에는 국내의 법률과 4가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PPWR 제6조는 단위당 재활용성 기준으로 3단계로 구분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포장재별 재질, 구조 세부기준에 따라 재활용 용이성을 4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둘째, PPWR에서는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포장재를 대상으로 하되 의료기기 접촉 감지 패키징과 혁신 패키징을 예외로 두고 있고, 국내에서는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로만 한정하고 있다. 셋째, PPWR에서는 대규모로 재활용되도록 보장하는 관리체계와 연계가 필수이지만 국내에서는 필수가 아니다. 마지막으로 증빙문서 보관 방식에도 국내만 재검토하는 기간이 3년인 차이가 있다.

PPWR 제6조	구분	자원재활용법 제9조 2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장에 출시되는 포장재	제한 대상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 (국내 제조업체(국내 소비용), 수입업체(통관기준))
의료기기 접촉 감지 패키징, 혁신 패키징(한시 예외)	면제 대상	재활용의무 미대상 포장재
3단계+@ 구분 재활용성 기준 A(≥95%), B(≥80%), C(≥70%), 재활용 불가 등급	재활용 등급 체계	재활용 용이성 평가 4단계 구분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재활용 어려움
재활용 시설 내 실제 재활용 실적 데이터 검증 예정	대규모 재활용	재활용센터의 설치(자원재활용법 13조 2) 연계 필수 아님
적합성 선언서 및 기술문서 작성·보관	증빙문서	자율 평가 후 평가 내용 및 기준 공개 3년마다 재검토

2. 중요 조항

제7조 플라스틱 패키징의 재활용 최소 함량

주요 내용

- 2030년 PCR사용 의무, 2026년 적합성 인증 및 EU 내 재활용 인프라 활용성 인·검증 필수
- 2026년 전후로 ① 재활용 함량 비율 산정식 및 평가 방법론 ② 고품질 재활용 기준(standards on high-quality recycling) 설정 예정
- EPR 분담금(Financial Contribution) 부과 기준으로 작동

접촉 민감 패키징
(PET로 제작 제품)

- 2030년 : 30%
- 2050년 : 50%

접촉 민감 패키징
(PET 이외 재료로 제작 제품)

- 2030년 : 10%
- 2050년 : 25%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수병 등)

- 2030년 : 30%
- 2050년 : 65%

기타 플라스틱

- 2030년 : 35%
- 2050년 : 65%

국내 법률과의 비교

PPWR 제6조는 PCR 플라스틱 사용 의무 항목이며, 국내 자원재활용법 제33조 3(2025년 9월 26일 시행 예정)에서도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그 제품 및 용기에 사용해야 한다고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다. 자원재활용법 하위 법령 개정안에 따르면 PET에 대해 재생원료 사용 10%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외 주요한 차이점으로는 국내 함량 산정방식이 이미 구체화되어 있고, 국내 재활용 범위가 국내로 한정되어 있어 다소 제한적이다.

PPWR 제7조	구분	자원재활용법 제33조 ¹⁾
시장에 출시되는 포장재	제한 대상	페트를 사용하여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생수생산업 및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대상으로 연간 5천 톤 이상 생산자 (2026년 시행 예정)
의료기기 접촉 감지 패키징, 혁신 패키징(한시 예외)	면제 대상	미표시하는 경우
2026년까지 함량 비율 방법론 채택 예정	함량 산정방식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량/ 해당 제품 또는 용기의 출고량 ²⁾
PCR 플라스틱 (비플라스틱 원료는 2032년까지 사용 목표 수립이 적절한지 평가 후 입법안 제시 예정)	원료	플라스틱 재생원료
EU 재활용 시설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시설에서 재활용된 원료만 허용 (증빙 자료 구비 필수)	재활용 범위	국내에서 발생한 폐원료 중 최종 소비자가 사용한 후 선별/수거되어 재활용된 원료만 허용 ²⁾
적합성 선언서 및 기술문서 작성·보관	증빙문서	표시 신청서 및 기타 첨부 서류 *의무 제도가 아니라 필요시 신청하는 항목

1)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의무 조항으로 2025.3.25 해당 조항 신설되었으며, 2025.9.26 시행 예정

2) [환경부 고시,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기준 및 방법, 2024](#)

2. 중요 조항

제10조 포장 최소화

주요 내용

- 패키징의 무게, 부피, 충수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포장 성능 기준 미충족 혹은 과대포장 제품 판매 금지
- 2027년 포장 최소화 요건의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표준 마련 예정, 기술문서 작성 의무
- 제24조 과대포장 관련 의무와 연계되어 그룹 포장, 운송 포장, 전자상거래 포장의 빈 공간 비율 50% 초과 금지

최소화해야 하는 '빈 공간'

- 절단된 종이 (space filled by paper cuttings)
- 공기 완충재 (air cushions)
- 에어캡 (bubble wraps)
- 스폰지 필러 (sponge fillers)
- 폼 필러 (foam fillers)
- 목모 (wood wool)
- 폴리스티렌 (polystyrene)
- 스티로폼 칩 (styrofoam chips)
- 기타 충전재 (other filling materials) 등으로 이루어진 포장 공간을 의미함

국내 법률과의 비교

PPWR 제10조는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포장재를 대상으로 포장 최소화를 요구하며, 2025년 2월 11일 이전에 등록된 디자인권·상표권·지리적 표시(GI) 포장은 예외로 인정한다. 반면 「자원재활용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품포장규칙 제4조는 포장재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KS T 1303 또는 환경부 고시 간이법으로 측정한 빈공간 비율을 종류별 10%~25%로 제한하고, 포장 횟수도 2차까지만 허용한다.

PPWR 제10조	구분	자원재활용법 제9조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7조 - 제품포장규칙 제4조				
시장에 출시되는 포장재	제한 대상	포장재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				
2025년 2월 11일 이전에 등록된 디자인권/상표권 보호 포장 / EU 법에 따라 보호받는 지리적 표시(GI) 제품, 품질인증 제품	면제 대상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 도구나 그 구성품, 소량(30g 또는 30ml 이하)의 비매품(증정품) 및 설명서, 규격서, 메모카드와 같은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제품				
2027년 2월 12일까지 포장 최소화 요건 준수 여부를 계산하고 측정하는 방법론 마련	방법론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인 산업포장(소비자포장)의 포장공간비율 측정방법(KS T 1303) 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간이측정방법				
빈공간 비율 50% 이하(제24조) 포장 횟수 제한 없음	포장 공간 비율 및 횟수 제한	1. 빈공간 비율				
		<table><tr><td>단위제품* > 화장품류 > 인체 및 두발세정용제품류</td><td>15% 이하</td></tr><tr><td>단위제품* > 화장품류 > 그밖의화장품류</td><td>10% 이하</td></tr><tr><td>종합제품** > 화장품류</td><td>25% 이하</td></tr></table> *단위제품: 1회이상포장한최소판매단위제품 **종합제품: 최소판매단위제품 2개이상함께포장한제품	단위제품* > 화장품류 > 인체 및 두발세정용제품류	15% 이하	단위제품* > 화장품류 > 그밖의화장품류	10% 이하
단위제품* > 화장품류 > 인체 및 두발세정용제품류	15% 이하					
단위제품* > 화장품류 > 그밖의화장품류	10% 이하					
종합제품** > 화장품류	25% 이하					
적합성 선언서 및 기술문서 작성·보관	증빙문서	2. 포장 횟수 2차 이내 제한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1회용 포장의 포장공간비율은 50% 이하, 포장횟수는 1차 이내로 적용(일부소포장, 일정매출액 미만사업자에외)				
		자율 평가 후 평가 내용 및 기준 공개 3년마다 재검토				

2. 중요 조항

제12조 패키징 라벨링

주요 내용

- 2028년부터 모든 패키징에 재질, 분리배출 방법 등을 포함한 조화된(Harmonised) 라벨 부착 의무화
- 부착이 어려운 소형 패키징, 그룹 포장에 일반 라벨 또는 디지털 라벨 부착 필요
- 2026년에 패키징 라벨링 상세 요건 및 디지털 표기 방법 관련 위임법(delegated acts) 제정 예정

DPP에
담기는 제품
전주기 정보
구성



산업별
규제



산림벌채



강제노동



환경발자국



재생원료
함량



폐기물
운송

국내 법률과의 비교

PPWR 제12조는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포장재에 대하여 QR·디지털제품여권(DPP) 등 ‘조회 가능한 라벨’을 부착하고, 적합성 선언서·기술문서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반면, 자원재활용법 제9조·제14조·제33조 ②는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로 범위를 한정해 포장 관련 표시만 의무화한다. 특히 국내 화장품의 경우 포장 겉면 표시 내용이 자원재활용법에서 평가결과, 분리배출 표시, 재생원료 사용 비율 표시 등을 담당하고 있고, 제품 세부 정보에 대해서는 화장품법에서 담당하고 있다.

PPWR 제12조	구분	자원재활용법 제9조, 제14조, 제33조 2
시장에 출시되는 포장재	제한 대상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 (국내 제조업체(국내 소비용), 수입업체(통관기준)) ※분리배출표시대상포장재는자원재활용법시행령제16조에별도공개
해당 연합 입법 행위에 정의된 다른 라벨링 요건으로 인해 포장에 공간이 없는 경우 또는 포장의 라벨링이 인체용 의약품 또는 수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협할 수 있는 경우	면제 대상	재활용의무 미대상 포장재
조화된 라벨 의무화('28.) QR, DPP 연계('30.)	연계 조건	포장 겉면 표시 (포장방법, 포장재의 재질, 재질·구조 평가 결과, 분리배출 표시, 재생원료 사용 비율 표시 등) ※이외화장품의기재사항은「화장품법」제10조에따라작성필요
해당 포장에 시장에 출시될 회원국이 정한 대로 최종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언어로 제공	언어	한국어(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하여 점자 또는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를 병행 가능) ※「화장품법」제10.12조기준
적합성 선언서 및 기술문서 작성·보관	증빙문서	검사성적서(제9조), 사용 비율 확인서(33조 2) ※분리배출표시대상포장재증빙문서는별도로없고 「분리배출표시에관한지침」제5조에따라표시

3. 적합성 선언서와 기술문서

2026년 8월, 유럽연합은 포장제품 전체에 대한 적합성 선언서(DoC, Declaration of Conformity) 보유 여부와 기술문서(TD, Technical Documentation) 작성에 대한 적합성 확인이 예정되었다. 기존 관련 문서 부재 및 미비한 업체의 경우, 유럽 내 패키징 유통 및 수출이 전면 불가능할 예정으로, 포장구조에 대한 설계의도 및 포장원료 사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적합성 선언서와 기술문서의 세부적인 내용을 정리하였다.

주요 구비 서류 중 하나인 적합성 선언서(DoC)란?

- EU 적합성 선언서(DoC, Declaration of Conformity)는 제조업체 혹은 유럽 대리인이 유통하려는 제품이 유럽연합에서 제시한 요건을 준수하고 있음에 대하여 서명하는 문서
- 서명 당사자는 해당 문서를 통해서 제품이 EU 법률을 준수하고 있음에 대한 책임 부여

DoC 주요 문서 구성요소

EU declaration of conformity No. XXX

- **제품의 일련번호 및 모델 또는 유형 식별**
The product's serial number, model or type identification
- **성명 및 제조업자 혹은 유럽 대리인의 주소**
Name and full business address or that of your authorised representative
- **적합성 선언서에 대한 책임 발생 확인**
This declaration of conformity is issued under the sole responsibility of the manufacturer.
- **선언 대상 제품 (제품 식별 및 추적 가능 정보, 필요 시 제품 식별이 가능할 정도의 명확한 이미지 컬러본)**
Object of the declaration (identification of product allowing traceability. It may include a colour image of sufficient clarity to enable the identification of the product, where appropriate.)
- **적합성 평가를 수행한 기관의 세부정보 (가능할 경우)**
The details of the notified body which carried out the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 (if applicable)
- **제품이 준수하는 관련 법률, 준수사항을 증명하기 위한 표준 또는 기타 수단**
The relevant legislation with which the product complies, as well as any harmonised standards or other means used to prove compliance
- **추가 정보(해당되는 경우)**
Supplementary information (if applicable)

주체별 프로세스

공급업체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해당
내용을 기술 문서에 기입하여
제조업체에 제공



제조업체

공급업체로부터 문서를 받아
12조 요건에 맞춰 라벨 부착 후,
적합성 평가 수행 및 적합성 선언



수입자, 유통업체

제조업체가 5~12조 준수했는지
확인(기술문서 및 적합성 선언서),
라벨에 자사 명칭 등 표시 추가,
EU 적합성 선언 사본을 보관

적합성 선언서 (DoC) 작성 예시

EU Declaration of Conformity

EU declaration of conformity No: 적합성 선언서 식별 번호1. No: 패키징 고유 식별번호 (unique identification of the packaging)

2. Name and address of the manufacturer:

제조업체명 및 주소

Name and address of the manufacturer's authorised representative:

제조업체의 공식 대리인 명칭 및 주소

3. This declaration of conformity is issued under the sole responsibility of the manufacturer.

4. Object of the declaration (identification of the packaging allowing traceability): description of the packaging:

제품 추적성 관련 정보(모델명, 패키징 유형 및 재질, 로트/배치 번호, 제품 코드/SKU, 유통일 등),
필요 시 제품 식별이 가능할 정도의 명확한 이미지 컬러본

5. The object of the declaration referred to in point 4 is in conformity with the following Union harmonisation legislation:

① 제품이 준수하는 관련 법률 1 (PPWR 등)목록 칸
추가 가능② 제품이 준수하는 관련 법률 2 (화장품법 등)

6. References to the relevant harmonised standards, common specifications, or other technical specifications applied:

① 적용한 조화 표준 or 공통 사양, 기타 기술 사양 1목록 칸
추가 가능② 적용한 조화 표준 or 공통 사양, 기타 기술 사양 2해당 없을 시
공란

7. the Notified Body:

1. Name: 인증 기관명 Address: 주소 Identification No: 인증서 번호2. Performed (description of intervention): 인증기관 수행 활동3. Certificate(s) issued: No 발급일자, dated 발급일자 (validity / conditions: 유효기간 및
관련 조건)8. Additional information: 특수 사항 (예외·면제, 혁신적 패키징 관련 내용 등)

Signed for and on behalf of:

Place and date of issue: 발행 장소 및 일자Name and function: 성명 및 직책Signature: 서명

* 해당 양식은 이해를 돕기 위해 PPWR ANNEXVIII를 기반으로 제작한 예시이며, 실제 적합성 선언서와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요 구비 문서 중 하나인 기술문서(TD)란?

- 기술문서(TD, Technical Documentation)는 적합성 선언서의 근거자료로써, 패키징의 설계·성능·환경영향 등을 정량적으로 상세하게 입증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평가기관의 검증서 등이 포함
- 기술문서가 증빙되지 않은 적합성 선언서는 효력이 없음

주요 문서 구성요소

기술문서 구성 내용(안)

- **성명 및 제조업자 혹은 유럽 대리인의 주소**
name and address, or those of any authorised representatives
- **제품에 대한 간략한 설명 및 안내**
a brief description of the product
- **제품의 일련번호 등의 제품 식별 사항**
identification of the product, for example, the product's serial number
- **제품 설계 및 제조와 관련된 시설의 이름 및 주소**
the name(s) and address(es) of the facilities involved in the design and manufacture of the product
- **적합성 평가를 수행한 기관의 세부정보 (가능할 경우)**
the name and address of any notified body involved in assessing the conformity of the product
- **제품 적합성 평가와 연관된 기관 정보**
a statement of the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 that has been followed
- **준수된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선언서**
the EU declaration of conformity
- **라벨링 및 사용설명서**
label and instructions of use
- **제품이 준수하고 있는 관련 규정에 대한 설명**
a statement of relevant regulations to which the product complies
- **준수하고 있는 기술표준에 대한 식별**
identification of technical standards with which compliance is claimed
- **부품 구성 및 사용 목록**
list of parts
- **제품 테스트 결과**
test results

역량 강화 및 대응방안 수립 방향성

적합성 선언서(DoC)와 기술문서(TD)와 **세트형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근거 기반 증빙이 우선시되어야 함

기술문서는 시험성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품 설계 방식에 대한 적합성을 증빙하는 역할로 사용되어야 함

유럽 내 관련 표준으로 통용되는 EN 13427, 13428 을 기술문서 작성 및 평가 기반으로 채택할 것을 권장함

특히, EN 13428 표준의 핵심은 패키징 최적화 및 최소화이나, 유통 및 사용 단계의 자원 투입 또한 고려함

VI

패키징 기술 센터와의 인터뷰

국내 화장품 패키징 기업들의 규제 대응, 기술 R&D, 인증·검증 현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규제 대응 과정에서의 현실적 제약과 개선이 필요한 요소들을 도출하여 정책 및 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패키징기술센터

박상희 팀장



“

PPWR은 단순한 규제가 아닌, 패키징 개념 자체를 재정의하는 패러다임 전환의 신호탄입니다.

기업들은 제품 설계부터 문서화, 영업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까지 조정해야 하는 과도기에 놓여있습니다.

지속가능한 패키징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업 혼자만의 대응이 아닌, 제조업체·유통사·소비자가 함께 인식과 행동을 바꾸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소비자를 포함한 경제 주체와 정부 모두 윤리적 선택과 환경적 책임을 고려해야 할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

Q. 안녕하세요, 팀장님의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패키징기술센터에서 기업 기술지원과 정책연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포장기술과 정책역량을 융합해 국내·외 규제 변화에 선제 대응하는 동시에 산업 전반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현장 기업이 겪는 기술·규제 애로에 대해 맞춤형 자문과 시험·분석을 제공해 실질적 해결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패키징 대전’ 등 정부 포상 제도를 운영해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함으로써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Q. 패키징 기술 센터에서는 어떤 것들을 지원하고 있나요?

A. 패키징기술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국내 유일의 패키징 전문 연구기관으로, 정책 자문부터 기술 개발, 시험·검증, 인력 양성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규제 대응을 위해 친환경 설계, 소재 전환, 구조 최적화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국내외 규격에 부합하는 시험·성능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포장기구(WPO)와 아시아포장연맹(APA) 등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 규제 동향을 신속히 공유하며, 특히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Q. 센터에서는 EU 패키징 규제인 PPWR 대응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A. PPWR은 기존 포장 규범을 넘어, 설계 단계부터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명확히 요구하는 EU의 신규 규제입니다. 센터는 세계포장기구(WPO) 회원으로서 연 2회 개최되는 지속가능성 실무그룹 회의에

참여해 각국 규제 변화, 재활용 정책, 에코디자인 가이드라인 등 지침을 직접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럽 현지의 규제 코디네이터들과 긴밀히 협력해 공식 문서, 설계 사례, 패키징 설계 가이드 템플릿을 신속히 파악하고, 국내 기업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Q. 국내 패키징 산업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A. 2022년 기준 약 60조 원 규모이며, 기업 약 2.5만 개와 종사자 21.8만 명 수준으로 파악됩니다(패키징기술센터 분석). 국내 패키징 산업은 플라스틱·종이·금속·인쇄·자동화 등 다양한 소재와 공정을 기반으로 균형적인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동화와 소재 가공 역량, 친환경 전환 기술, 전자상거래에 적합한 유연한 제조 구조가 강점으로 평가됩니다. 최근 전자상거래와 소비재 산업의 고도화로 유통 패키징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나 내수 중심 구조로 기업의 브랜드 가치 및 글로벌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정책·재정 지원과 함께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역량 강화 및 글로벌 마케팅을 통한 브랜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합니다.

Q. 그럼 국내 기업들의 패키징 기술 수준은 대외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나요?

A. 국내 패키징 제조 기업의 기술력은 소량 다품종 대응, 고품질 생산, 납기 준수 등에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있으며, 주요 기업은 유럽 메이저 브랜드와도 경쟁 가능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패키징 어워드 수상이 해외 바이어와의 협의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어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 기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Q. 기술 수준이 높으면,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국내 패키징 기업들의 EU 진출 및 글로벌 확장이 단기간에도 가능할까요?

A. EU 시장은 제품별 안전·환경 규제를 충족하기 위해 다수의 인증 문서와 원료 검증 자료 제출, 복잡한 행정 절차 등 높은 비관세 장벽이 존재합니다. 여기에 통관·운송 등 추가 물류비용까지 발생해 현지 기업 대비 비용 경쟁력이 낮아집니다. 그 결과 국내 기업은 지속가능 포장 의무가 엄격한 EU·미국보다 규제가 완화된 동남아 등 신흥국에서 일반 패키징 중심의 가격 경쟁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U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브랜드 파워를 가진 기술력 좋은 기업들이 존재해 국내 기업들은 비용 경쟁력도 함께 고려해야 브랜드 경쟁력도 같이 키워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Q. 국내에서 화장품 산업에서 PPWR 대응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화장품 기업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나요?

A. 대기업은 ESG 경영전략과 연계해 PPWR에 선제 대응하며, 바이어 요구사항을 설계 단계부터 반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소·중견, 특히 영세 OEM·ODM 기업은 규제 정보 접근성과 해석 역량이 부족해 대응 속도가 더딘 편입니다. 역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발주처 납품 요건 충족이 우선되다 보니 규제에 대한 근본적 준비는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격차는 향후 유럽 시장 진출 시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Q. 화장품 기업 입장에서 PPWR 규제 대응에 있어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현재까지 공개된 PPWR 규정은 기본 원칙 제시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실무에 즉시 적용하기 어렵고,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큼니다. 이 부분은 모든 산업이 다 같이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지만, 특히 화장품 업계에서는 패키징의 다양성 때문에 더 까다롭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Q. 구체적으로, PPWR의 요구사항 중 화장품 산업에 더 까다롭게 다가오는 조항이 있을까요?

A. PPWR의 기본 요구사항들이 화장품 산업에는 모두 까다로울 수 밖에 없습니다. 화장품은 소형 용기 비중이 높아 의무 표시를 모두 담기 어렵고, QR코드 등 디지털 라벨링이 대안으로 검토되지만 일부 항목은 여전히 실물 표기가 요구됩니다. 펌프·스포이드·코팅 등 복합 구조와 강한 브랜딩으로 재활용성이 낮으며, 물질 정보 공개는 브랜드·디자인 리스크를 초래합니다. 더 나아가, 접촉민감 포장의 PCR 사용 의무, 재활용성 등급에 따른 설계 변경, 미니·1회용 제한, 원재료 조달의 비용·품질 균형 등 복합 과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라벨링·설계·소재 조달·채널 전략을 전면 재설계해야 하지만, 규제 충족과 경쟁력 유지의 균형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 K-뷰티 산업도 이제 중소·중견 기업이 이끌고 있다 보니, 적합성 선언서와 기술 문서를 직접 기업 담당자가 작성하고 적합성 확보하는 과정에서 실무진들은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Q. 그럼 이런 부분들이 곧 글로벌 화장품 업체들이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공급업체에 요구하는 주요 항목에 포함될 것 같은데, 맞을까요?

A. 네, 맞습니다. 글로벌 화장품 기업들은 이미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PCR(재생원료) 사용 검증, 재활용 가능한 단일재질 설계, 과대포장 최소화, 리필·재사용 체계 구축, 원료·물질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기본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EU PPWR 대응 차원에서 2030년까지 모든 포장을 재활용 가능하게 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PCR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기준이 강화되고 있으며, 로레알·LVMH 등 글로벌 브랜드는 ‘100% 재활용 가능 포장’을 자체 목표로 설정해 공급망 전반에 더 높은 수준의 지속가능성 요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Q. 글로벌 화장품과 협업 또는 글로벌 수준에 맞게 한국 기업들이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우선 PCR(재활용 원료) 사용 비율을 충족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재활용이 용이한 단일재질 중심 설계, 과대포장 최소화, 리필·재사용 포장 도입은 핵심 과제입니다. 소재 내 유해물질 공개와 데이터 기반의 투명한 정보 관리도 글로벌 바이어의 기본 요구로 자리잡았습니다. 아울러, 공급망 전 단계에서

친환경 원부자재 전환과 자원 효율화 전략을 병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지속가능성과 데이터 기반 투명성”이라는 새로운 글로벌 패러다임에 부합하며, 한국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단기간에 대응이 가능하지 않아, 한국 기업도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Q. 국내에서는 화장품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A. 기존 K-뷰티의 경쟁력은 디자인·기능·생산력에서 글로벌 리딩 그룹과 견줄 만합니다. 최근에는 생분해 플라스틱, 고순도 PCR 소재의 대량생산, 재생원료 혼입기술이 빠르게 고도화되며 일부 분야는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다만, 설계-제품수명평가(LCA)-검증에 이르는 전 주기 체계와 고부가가치 인증 확보에서는 격차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PPWR 등 EU 규제는 고품질 분리수거 시스템에서 유래한 PCR만을 인정하고, PCR 조성의 투명성과 이력 추적을 요구해 국내 일반 재생원료로는 충족이 어렵습니다. 실무 지원을 실질화하려면 기술문서 작성 샘플·템플릿 제공, PCR 공급망 인증 프로세스 안내, LCA 기반 검증 및 추적 체계 구축 가이드 등 즉시 적용 가능한 지원이 시급합니다.



Q. 순환경제의 구조에서 봤을 때, 국내 기업들이 개선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A. 국내 화장품 기업은 빠른 디자인 대응과 생산력에서는 경쟁력을 갖췄지만, 순환경제의 핵심 고리인 회수-재활용-고품질 재생원료 도입 체계는 아직 미흡합니다. 소형 복합 포장과 펌프·스포이드 등 분리 어려운 구조가 많아 재활용 등급이 낮고, 비닐·PVC 등 재활용 곤란 소재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재활용성 설계와 단일 소재 전환도 충분히 정착되지 못했습니다. 폐기물 분리 인프라의 국제적 신뢰와 실제 재활용률에 대한 의문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단일 재질·모듈형 설계, 고품질 재생원료 조달 강화, 포장-폐기 연계 회수 체계 구축, 분리배출 편의 향상 디자인을 중심으로 설계와 공급망을 전면 재편해야 하며, 포장 설계 단계부터 디자인·원료·회수·재활용-재도입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할 때 순환경제 전환, 규제 대응, 브랜드 이미지 강화의 3중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Q. 이런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국가가 어느 관점에서 지원을 해야 할까요?

A. 화장품 업계의 순환경제 전환을 가속화하려면 신제품 개발 단계부터 친환경 패키징을 설계·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업계 특성에 맞춘 친환경 인증 비용 보조, 설비 전환 지원, 국제 인증·규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 구축이 효과적입니다. 아울러 리필스테이션과 회수 캠페인 등 회수·재활용 구조 개선과 함께, 전문 실증랩을 통해 신소재·재활용 패키징의 시험·검증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실질적 도움이 됩니다. 산업 전반에서는 순환경제형 포장 설계 표준화, 재활용 용이성 평가 기준 정립, 글로벌 인증 절차 지원, 폐기물 회수·재활용 네트워크 고도화 등 인센티브 정책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과제는 대규모 일괄 투자보다는 정부·지자체·산업계·학계의 정보 공유 체계와 전문 인력 양성, 단계적 실증 프로젝트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Q. 그럼 국내 기업들의 해외 인증 취득 현황은 어떤가요?

A. 현재 국내 화장품 기업의 글로벌 패키징 인증 취득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국내에는 EU 관련 패키징 인증을 직접 발급할 수 있는 공인 기관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TÜV와 같은 글로벌 시험·인증기관이나 Control Union, Ecocert 등 해외 인증기관이 RecyClass 인증을 기반으로 한 재활용성 라벨링 및 검증 서비스 심사를 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증의 공식성, 적용 범위, 비용 효율성 등에서 기관별 차이가 크기 때문에 기업들은 충분한 사전 검토와 전략적 선택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한국생산기술연구원도 산업통상자원부와 글로벌 상호인정이 가능한 한국형 인증제도 마련을 목표로, 2023년부터 사용 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가 본격적으로 마련된다면,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인증 취득을 한층 원활하게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Q. EU PPWR 초안 공개 이후 국내 정부 관계자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A. 국내 정부는 EU PPWR을 패키징 분야의 글로벌 기준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제도는 화학물질 관리, 라벨링, EPR(생산자책임재활용) 등 개별 규정은 비교적 잘 갖춰져 있으나, 글로벌과 직접 비교 가능한 인증 체계나 IT 기반의 투명한 정보 제공 측면에서는 격차가 존재합니다. 이에, 정부는 국내 인증과 국제 인증 간 정합성을 높이고, 해외 진출 시 발생하는 이중 규제와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품질 PCR 사용, 재활용 용이성, 디지털 라벨링 등 PPWR의 핵심 요소를 국내 규제와 지원 정책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업들이 실질적인 전환을 할 수 있게, 산업계와 정부가 공동으로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패키징 산업의 과도기를
잘 해쳐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 제조업자, 유통업자, 그리고
소비자까지 다 함께해야 합니다.”**

VII

Q&A

실무진들이 PPWR 규정과 관련하여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난이도(입문/심화) 별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기본이 되는 PPWR Q&A

Part 1. 개념 및 법적 지원

● Q1. PPWR은 언제부터 시행되는 규제인가요?

- ✓ PPWR은 1994년 포장지침(PPWD)을 대체해 2025년 2월 11일 발효되었고, 2026년 8월 12일부터 시행될 EU 포장·포장폐기물 규정입니다. 목표는 2030년까지 모든 포장을 경제적으로 재활용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폐기물 발생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것입니다. 규정(Regulation) 형식이라 회원국 별도 입법 없이 동일 요건이 즉시 적용됩니다.

● Q2. 패키징을 생산하지 않고 패키징을 구입하여 충전만 하는 비EU 제조업자일 경우에도 PPWR 적용 대상에 해당되나요?

- ✓ EU로 제품을 수출하는 제3국 기업도 EU 기업과 동일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수출국 생산자 등록 및 EPR을 이행해야 하며, 해외 법인이 없는 경우 EU 내 공인대리인(Authorised Representative)을 지정해야 합니다.
- ✓ 법리적으로 완제품의 '시장 최초 출시 주체'는 '생산자(Producer)'로 간주되어 제품 특성 및 재질, 유통 채널에 따라 PPWR 제5-12조 중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문서 증빙 의무 등 법적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 Q3. PPWR 도입으로 인해 EU 수출 화장품 제품 중 어떤 패키징 유형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까요? 기업에서 이에 따른 전환 전략 수립 시 어떤 항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까요?

- ✓ 가장 큰 영향을 받을 패키징 유형은 적합성 선언 준수 조항인 제5-12조를 충족하지 못하는 플라스틱 포장 제품입니다. 전환 계획 수립 시에는 법적 금지 시점이 가장 빠른 제품, EPR 기여금 부담이 큰 제품, 그리고 브랜드의 주력 제품으로서 시장 영향력이 큰 제품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판단하시어 패키징 리디자인 및 재질 전환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사내 기술문서·DPP 관리 체계, 인·검증 대응 플로우 설계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 Q4. PPWR에는 유럽연합 내 시판되는 모든 포장과 포장 폐기물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대상 범위에 1차(판매포장), 2차(그룹포장), 3차(운송포장)가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그렇다면 각 포장차수별 규정 준수여부를 적합성 선언서나 기술자료에 반영해야 하는 것일까요?

- ✓ 아닙니다. 1차/2차/3차 포장 분류는 기능적 기준이며, 이는 적합성 선언서나 기술문서에서 언급하는 '포장 유형(type)' 또는 '포맷(format)'과는 별개 개념입니다.
- ✓ '1차, 2차, 3차'의 포장 분류 명칭은 프랑스 AGECE법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이며, 기능적인 측면에서 PPWR의 Sales packaging (제3조 5호), Grouped packaging (제3조 6호), Transport packaging (제3조 7호)와 매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EU PPWR Recital 44에 따르면 '포장 유형(type)'은 주로 사용된 재질(predominant polymer)을 기준으로, '포맷(format)'은 크기와 형상 등 외형적 사양을 기준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 ✓ 포장재 재활용성 등급 산정은 반드시 Annex II의 카테고리에 따라 수행해야 하므로(Art. 6(3)), 기술문서 작성 시 포장 유형 분류는 Annex II Table 1의 22개 카테고리에 따라 정의해야 합니다.

● Q5. PPWR 내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관련 최신 내용과 플라스틱 재생원료 관련 규정 및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 ✓ 지난 6월 28일 대한화장품협회(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에서 발간된 [「대한화장품협회」 2025 ESG 인사이트 리포트\(재생원료와 패키징\)](#)을 통해 화장품 패키징의 주요 재질과 재생 플라스틱 원료, 글로벌 재생원료 규제 동향(PPWR 포함)을 정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리포트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화장품 산업이 궁금해하는 PPWR Q&A

Part 2. 조항 세부 질문

- Q6. K-코스메틱 제품은 종종 독특한 형태나 다채로운 디자인, 복합적인 재질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PPWR의 재활용성(제6조) 규제가 이러한 K-코스메틱 특유의 디자인에 어떤 제약을 가하며, 창의성을 유지하면서 규제를 준수할 방법은 무엇인가요?

- ✓ PPWR은 포장재의 재활용성을 최우선으로 하며, 재활용을 방해하는 복합 재질이나 불필요한 디자인 요소를 제한합니다. 이는 K-코스메틱의 독특한 디자인에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 ✓ 해결책으로는 ① 단일 재질(mono-material)을 사용하면서도 질감이나 형태로 차별화, ② 소비자가 쉽게 분리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분리 용이성'을 극대화한 디자인 적용 ③ 재사용 가능한 고급 용기에 디자인 가치를 집중하기 위해 펌프 등의 부품은 재사용 용기에 고정하고 내용물만 리필하는 '리필 시스템' 도입, 또는 ④ 재활용이 용이한 잉크/코팅 기술 도입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 ✓ 유럽의 RecyClass(플라스틱) 또는 4evergreen(종이)과 같은 재활용성 평가 도구 및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포장재의 재활용성 등급 평가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Q7. PPWR의 '재활용 가능 설계(Designed for Recycling)' 요건(제6조)과 별개로, 특정 EU 회원국에서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에 대해 추가적인 세금(플라스틱세 등)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나요?

- ✓ 네, PPWR의 재활용성 요건과 별개로 이탈리아, 스페인 등 일부 EU 회원국은 재활용이 어렵거나 재생 원료를 포함하지 않은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해 별도의 '플라스틱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PPWR의 재생 원료 의무(제7조)와는 별개로 자국 내에서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적 수단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해당 국가로 수출하는 제품의 경우, 포장재의 플라스틱 함량에 따라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하여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Q8. PPWR이 요구하는 플라스틱 패키징의 재활용 최소 함량(제7조)을 충족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재생 원료를 사용해야 하며, 그 적합성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 ✓ 사용 후 재활용된 원료(Post-Consumer Recycled, PCR) 사용이 가능합니다. 앞서 [화장품 산업의 Case Study]를 통해 알아본 것 처럼 재생원료 최소함량 충족을 위해 PCR 플라스틱(rPET, rHDPE, rPP 등) 함량 목표를 세운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PCR 플라스틱은 화학적 재활용 또는 기계적 재활용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재생 원료의 적합성은 ISCC PLUS, EuCertPlast와 같은 국제 인증을 통해 증명하거나, 공급업체로부터 재활용 원료 함량에 대한 공식 선언서 및 추적성(Traceability) 문서를 받아 관리해야 합니다.

- Q9. 제7조에서 패키징 PCR 의무 사용 비율 산정 시 펌프, 캡, 힌지 등 소용량 부품에 사용되는 미량 플라스틱 (0.X g 단위)도 PCR 사용 의무 적용 대상에 포함되나요?

- ✓ 아닙니다. 포장 전체 무게의 5% 미만인 플라스틱 부품은 PCR 최소함량 산출 시 제외 가능(Art. 7(5) (b))합니다. 따라서, 펌프, 캡, 힌지 등이 각각 전체 포장 무게의 5% 미만이라면 PCR 사용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부품의 PCR 함량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화장품 산업이 궁금해하는 PPWR Q&A

Part 2. 조항 세부 질문

- Q10. PPWR 제25조 규제는 화장품의 소용량 샘플, 미니어처 제품 또는 호텔 어메니티와 같은 개별 포장에도 적용되나요? 그렇다면 어떤 대안을 고려해야 할까요?

✓ 네, PPWR은 호텔 및 숙박 부문에서 사용되는 미니어처 화장품 및 위생용품과 같은 특정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의 시장 출시를 2030년 1월 1일부터 금지합니다(Art. 25). 이는 소용량 샘플 및 어메니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안으로는 대용량 디스펜서 도입, 리필 가능한 용기 사용, 교체형 제품(예: 샴푸 바, 비누)으로의 전환, 또는 종이/재활용 가능한 단일 재질 패키징으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합니다.

- Q11. PPWR의 재사용 및 리필 목표(제29조)가 화장품 산업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브랜드사가 고려해야 할 초기 단계의 비즈니스 모델 변화는 무엇인가요?

✓ PPWR의 재사용 목표는 주로 음료, 운송, 전자상거래 포장에 구체적인 비율을 설정하고 있지만, 화장품 산업에도 재사용/리필 모델 도입을 장려합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B2B 운송 포장재의 재사용 시스템 도입을 고려할 수 있고, 향후에 소비자 대상으로는 소비자가 매장에 빈 용기를 가져와 리필하는 '리필 스테이션' 시범 운영, 또는 재사용 가능한 용기를 회수하는 '공병 수거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재사용 모델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 Q12. 적합성 선언서 작성 시, 각각의 패키징 유형(packaging type)마다 문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패키징 유형 분류 기준이 무엇인가요?

✓ EU PPWR Recital 44에 따르면 '패키징 유형(type)'은 주로 사용된 재질(predominant polymer)을 기준으로, '포맷(format)'은 크기와 형상 등 외형적 사양을 기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포장재 재활용성 등급 산정은 반드시 Annex II의 카테고리에 따라 수행해야 하므로(Art. 6(3)), 기술문서 작성 시 포장 유형 분류는 Annex II Table 1의 22개 카테고리에 따라 정의해야 합니다.

- Q13. PPWR의 복잡한 요구사항들을 충족하기 위해, 우리의 패키징 공급망(원료 공급업체, 패키징 제조업체 등)과 어떻게 협력하여 규제 준수를 보장할 수 있나요?

✓ 공급망 내 모든 파트너와 PPWR 요구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소통하고, 각 단계에서 필요한 규제 준수 책임과 역할을 정의해야 합니다. 원료 및 패키징 공급업체로부터는 PPWR 요건(재활용성, 재생 원료 함량, 유해 물질 제한 등)을 충족한다는 공식적인 선언서나 인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감사(Audit)를 통해 공급망의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공동 기술 개발 또는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협력해야 합니다.

- Q14. PPWR 준수를 위한 EU 적합성 선언(Declaration of Conformity) 작성 시 어떤 정보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내 기업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문서는 무엇인가요?

✓ EU 적합성 선언에는 패키징이 PPWR의 모든 필수 요건(재활용성, 재생 원료 함량, 유해 물질 제한, 포장 최소화 등)을 충족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업은 패키징의 재료 구성 명세서, 재활용성 평가 보고서(RecyClass 등), 재생 원료 함량 증명서(인증서 또는 공급업체 선언서), 유해 물질 시험 성적서, 포장 최소화 설계에 대한 기술 문서 등을 준비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화장품 산업이 궁금해하는 PPWR Q&A

Part 3. EU 진출 시 고려 항목

- Q15. PPWR은 EU 규정이지만, 각 회원국별로 추가적인 시행 규칙이나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역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 PPWR은 EU '규정(Regulation)'이므로 원칙적으로 모든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지만, 일부 영역에서는 회원국이 자체적인 추가 조치나 세부 규칙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환불 시스템(DRS)의 세부 운영 방식, 특정 일회용 패키징에 대한 추가적인 국가별 금지 조치, 또는 재사용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별 인센티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진출하려는 EU 회원국의 환경부, EPR 조직(PRO), 또는 해당 국가의 패키징 관련 산업 협회 웹사이트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 Q16. 현재 한국에서 생산되어 EU로 수출되는 화장품의 패키징이 PPWR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지 어떻게 효율적으로 검증하고, EU 회원국별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해석의 미묘한 차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국내 기업은 패키징 공급업체로부터 PPWR 요건(재활용성, 재생 원료 함량, 유해 물질 등)에 대한 모든 기술 문서와 적합성 선언서 근거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유럽 규제 컨설팅 전문 기업이나 EPR 서비스 제공업체와 협력하여 패키징의 EU 규제 적합성을 평가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Q17. PPWR 준수 여부에 대한 EU 시장 감시 당국의 검증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만약 우리의 패키징이 규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어떤 종류의 벌칙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EU 회원국별로 차이가 있나요?

✓ EU 시장 감시 당국은 무작위 샘플링, 소비자 불만 접수, 경쟁사 제보, 또는 문서 검토(적합성 선언서, 기술 문서 등)를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규제 미충족 시 부과되는 벌칙은 ① 시장 출시 금지 및 제품 회수 명령, ② 행정 벌금 부과(제68조), ③ 기업 이미지 및 브랜드 신뢰도 하락 등이 있습니다. 벌금의 구체적인 액수나 적용 방식은 PPWR이 회원국에 위임한 사항이므로, EU 회원국별 국내 법규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출하려는 각 국가의 벌칙 규정을 사전에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Q18. 한국에서 제조된 화장품 패키징이 EU로 수출될 때, PPWR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지 어떻게 증명해야 하며, 특히 재생 원료의 경우 한국 내 공급망의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해야 할까요?

✓ 한국에서 제조되었더라도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패키징은 PPWR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주로 EU 내 수입업자 또는 공인 대리인(Authorised Representative)이 규제 준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국내 브랜드는 패키징 공급업체로부터 재료 구성, 재활용성 평가, 유해 물질 불검출, 재생 원료 함량 등에 대한 정확한 기술 문서와 시험 성적서, 그리고 재생 원료의 경우 국제 인증(예: ISCC PLUS)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추적성(Traceability) 증명서를 받아 협력사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Q19. 한국의 중소 화장품 브랜드사들이 PPWR과 같은 복잡한 EU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정부 지원이나 협력 방안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 국내 중소기업들은 PPWR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예: 환경부, 식약처)나 관련 기관(예: 한국생산성본부, 코트라,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에서 제공하는 PPWR 관련 설명회, 컨설팅 프로그램, 기술 개발 지원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유럽 규제 컨설팅 전문 기업이나 EPR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https://kcia.or.kr>

2025 대한화장품협회 지속가능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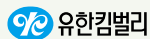
CHANEL



AMOREPACIFIC



L'ORÉAL
KORÉA



Aēsop.

ESTÉE
LAUDER
COMPANIES



COSMAX

Amway

Johnson&Johnson

HK Kolmar

P&G

Graphics by Freepik

대한화장품협회의 Cosmetic Industry Special Report 2025는 Deloitte의 전문가들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한화장품협회 회원들을 위한 ESG 관련 인사이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에 포함된 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ESG 관련 규제 내용의 경우, 2025년 8월까지의 최신내용으로 구성되었으나, 인증기준, 모범사례, 당국의 지침 및 해석 등 규제환경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서 지속적으로 변화·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규제 환경의 변화·발전에 따라 장래에는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